

附錄
부록

초기 해주최씨대종회

大宗會

1950年代

전국의 해주최씨를 하나로 묶는 일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민족의 큰 비극이었던 6·25동란이 끝난 후 나라 안의 많은 성씨(姓氏)들이 종친회 또는 화수회(花樹會)를 결성하던 무렵인 1956년 가을이었다.

당시 한학자이며 문중 내력에 밝은 전한공파의 인섭(仁燮)、원선(元善)、원보(元溥)종친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57. 4. 28 창립총회를 열어 「해주씨대종회」의 발족을 선언하며, 초대회장에 元善(서울의 대교수)종친을 선출하였다.

창립총회(1957)에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 문.. 병만(秉萬)、윤주(允周)、창덕(昌德)、응복(應福)、

동(棟)、일보(日溥)、인섭(仁燮)(이상 무순)

회 장.. 원선(元善)

부 회 장.. 병권(秉權)、원보(元溥)

총무부장.. 재훈(在煥)

조직부장.. 진수(鎭洙)

섭의부장.. 종석(種錫)

재정부장.. 상설(尙嵩)

기획부장.. 창근(昌根)

간 사.. 기섭(起燮)、병희(秉熙)、성일(成一)、이섭(理燮)

이 사.. 양섭(陽燮)、문진(文鎭)、병석(炳錫)、장섭(長燮)、

영직(泳稷)、항섭(恒燮)、봉주(鳳柱)、홍섭(興燮)、

경보(慶溥)、상연(祥淵)、창섭(昌燮)、병선(秉善)

매년 춘추로 2회 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일차적 사업으로 해주문헌서원을 대신하는 영당을 서울에 건립하여 제사를 올릴 것을 의결하고 재원으로 특별기부금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대종회 운영은 연회비로 1천 원씩 거출기로 하였다.

한편 종회 사무실은 임시로 총무부장(總務部長)인 재훈(在煥) 씨의 집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소소한 경상비는 고문 인섭(仁燮、재훈 씨 부친) 씨가 부담하였다.

1957년 8월 2일에 영당건립위원회가 결성되고, 상연(祥淵) 이사가 서대문구 갈현동의 임야 약 500평을 회사하고 한편 특지(特誌) 종친들의 찬조금으로 영당을 건립하였다. 문헌영당(文憲影堂)이라 이름하고 문헌공(文憲公)、문화공(文和公) 영정을 봉안하고, 1958년 봄에 첫 향사(享祀)를 올리니 참석한 종친들이 모두 감격하였다.

그러나 大宗會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1957년 11월 3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원선(元善) 회장이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 제2대 회장으로 진수

(鎭洙) 씨가 선임되었지만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종문사에 힘을 쓰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선거에서 낙선되고 대종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니 임원진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또 종재관리(宗財管理)에도 이론이 생겼다.

이런 와중에 1958년 8월 2일에는 원보(元溥) 씨가 대종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동료 종친들과 족보발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당시 전남 화순종회(和順宗會)에서는 봉주(鳳柱) 대종회이사가 중심이 되어 보서발간사업¹에 착수하여 이미 수단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화순종회 측에서 반발하여 이로 인하여 대종회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대종회 창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불지(佛智)종친들은 대종회 일에서 손을 떼었고 순수한 동기에서 대종회를 창립하고 위선사업을 펼쳐 나가려던 주체 종친들도 대종회를 떠나게 되니 대종회는 창립한 지만 2년 만인 1959년 봄에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이와 같이 대종회가 해체됨에 따라 문헌영당의 향사를 올릴 주체가 없어진 데다가 영당의 부지(敷地)마저 타인의 명의로 넘어갔다. 즉 부지 500평을 기증받은 대종회는 보존등기(保存登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했던 상연종친이 병환으로 누웠는데 그 아들의 사업 실패로 임야가 매도된 것이었다.

부지가 남의 땅으로 되어버린 상황에서 원보 씨 등 종친들이 불지종친(전한공파)에 사정하여 대지를 마련하고 1960년 가을 서울 갈현동의 문헌영당을 철거하여 불지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로 옮겨 왔다. 그러나 당시 불지 부락의 길이 좁아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여 불지종친들이 한참 바쁜 추수기(秋收期)라 낮에는 들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밤에 등짐으로 저 날라서 영당을 복원하였다. 그후 현 대종회에서 주관할 때까지 23년간을 불지종문에서 제사를 올렸으니 그 분들의 높은 숭조정신이 해주최씨 一千年史에 기록될 장한 일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註·1. 보서발간사업… 화순의 보서발간사업이 파보이었는데 대동보이었는데는 밝히지 않았다.

신축대동보(辛丑大同譜)의 발간

그리고 대종회가 와해된 상태에서 원보종친의 노력과 여러분의 협조로 불충분하다고는 하지만 1961년 신축대동보(辛丑大同譜)가 발간된 것은 이 역시 불행 중 다행한 일이며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동보 발간에 관한 기록은 해주최씨대종회十年史 43. 390쪽 참조

사선(死線)을 넘어 꽃피운 머그님의 효심

한국동란 때의 일이다. 1950년 말 연합군이 북진했다가 중공군(中共軍)의 개입으로 일시 후퇴할 무렵에 상관(賞均)종친의 일가족도 세거지인 황해도 연백군 도천면(道川面)

을 떠나 남하하였다. 이 때 모친 장성서씨(長城徐氏)는 평소 소중히 소장해오던 족보를 내 한 몸 빠져나오기도 어려웠던 피난길에 끝까지 들고 내려와 현 대동보에在北宗친을 포함하는 교리공파의 수단이 수록되게 하였다. 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군(夫君)은 31세 병철(炳哲)종친으로 훈원원관관(判官) 민한(敏翰)공의 증손이다.

해주최씨대중회 재출범

대중회 창립 총회

현 해주최씨대중회는 1982년 10월 23일 해주최씨 대중회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채택하고, 초대 임원진을 선출함으로써 다시 출범을 고하게 되었다.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재형(在衡)
부위원장..태호(台鎬)、길준(吉峻)
총무위원..준기(俊基)、우(愚)、태석(泰石)、기호(起鎬)
조직위원..재훈(在煥)、이섭(理燮)、용선(龍善)、영두(榮斗)、
만호(萬鎬)、식(植)、기섭(起燮)、일선(日善)
재무위원..만기(萬基)、용구(龍九)、영수(泳洙)、광식(光植)

〔초대 임원진〕

회 장..재형(在衡、문정공파) 전 제주지방 법원장, 변호사
부 회 장..천보(天溥、전한공) 삼영제약합자회사 사장
익열(翼列、대령군) 대동외과 의원장
길준(吉峻、교리공) (주)협진산업 대표, 전 국제청간세국장
만기(萬基、교리공) (주)우미상공 대표
영주(煥周、사정공) (주)한국대체에너지 대표
봉섭(奉燮、전한공) 최치과의원장
원식(元植、좌랑공) (주)인천항운 대표 좌랑공파회장
간 사 장..승균(承君)
부간사장..우(愚)、광식(光植)
총무간사..광훈(光勳)
재무간사..상균(賞均)
조직간사..형섭(炯燮)
사업간사..순정(淳正)
사업부간사..선식(鮮植)
홍보간사..한수(漢秀)
종무간사..재하(在夏)
운영위원..세환(世桓) 외 36명

海州崔氏大宗會會則

해주최씨대종회회칙

第一章 總則

第1條 (名稱) 本會는 海州崔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必要에 따라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 (目的) 本會는 海州崔氏 先祖의 偉業을 기리고, 宗親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는 한편 後孫들의 無窮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實施한다.

1. 先祖를 奉享하고 偉業을 追慕하는 事業
 2. 會員의 大同團結을 期하기 爲한 親睦事業
 3. 會員의 慶弔事에 對한 相扶相助
 4. 會員子女들에 對한 獎學事業
 5. 宗中 文獻의 發掘刊行 및 宗誌의 發刊事業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符合되는 事業
- 第5條 (運營의 原則) 本會는 어느 個人이나 特定의 政黨, 宗教 또는 社會團體를 爲해서는 活動을 하지 못한다.

第二章 會員

第6條 (會員) 本會는 海州崔氏 宗親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加入與否와 關係없이 海州崔氏는 自動的으로 會員이 된다.

第7條 (權利) 會員은 누구나 本會 會則이 定하는바에 따라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第8條 (義務) 會員은 누구나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最善의 協助를 하여야 한다.

第三章 總會

第9條 (構成) 總會는 本會의 全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0條 (種類 및 召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定期總會는 每年 春季에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運營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1條 (成立과 權限) 總會는 參席會員數와 關係없이 成立됨을 原則으로 하며 豫算, 決算, 事業計劃 및 運營委員會의 運營狀況의 報告를 받는다.

第四章 運營委員會

第12條 (構成) 運營委員會는 會則 第17條의 任員 및 大同譜上에 明示된 各派 代表 二人과 會長團이 委囑하는 貳

百人以內的委員으로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機關이다。
第13條(任期) 運營委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회계연도와 같으며 重任의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第14條(召集) 定期 運營委員會는 每年 3月과 12月에 開催하고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臨時 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成立과 議決) 運營委員會는 在籍 過半數의 出席으로成立되며 議案은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資産 處分等의 議決은 在籍 3分の 2 以上の 出席과 出席委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한다。運營委員中 不得已한 事由로 出席이 不可能할 때에는 成員과 議決을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第16條(議決事項)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의 改正
2. 會長과 監事의 選任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承認
4. 任員會에서 附議된 事項
5.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五章 任 員

第17條(構成)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首席副會長 1人
3. 副會長 30人 以內

4. 事務總長 1人、事務副總長 2人

5. 總務局長 1人、副局長 1人

6. 財務局長 1人、副局長 1人

7. 組織局長 1人、副局長 1人

8. 事業局長 1人、副局長 1人

9. 弘報局長 1人、副局長 1人

10. 宗務局長 1人、副局長 1人

11. 靑年局長 1人、副局長 1人

12. 婦女局長 1人、副局長 1人

13. 監 事 2人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若干人의 顧問 및 諮問委員을 추대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전문(직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會長이 선임한다。또한 事務局에 有給 事務局長과 宗務를 전담하는 유급 조직계획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會長은 대중회의 목적을 자조하는 며늘 단체(며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며늘회는 자율가입을 원칙으로 만 70세 미만의 종친 며늘회원으로 구성하며 事務總長 관장하에 운영하고 임원과 동일한 임기제로 표결참가는 불가하다。

第18條(選任) 會長과 監事는 運營委員會에서 選任하고 首席副會長、副會長、事務總長、事務副總長 및 局長、副局長、中央靑年會 會長은 會長이 選任하여 任員會議에 보고하고 運營委員會議의 追認을 받는다。다만、中央靑年會 會長은 當然職으로 靑年局長이 되며 各局에 약간명의 局

委員을 선임할 수 있다.

第19條(任期) 任員의任期는滿2年으로 회계연도와 같으며 重任의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補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0條(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副會長의 序列은 會長 團會議에서 定한다.

3.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實務執行을 掌管한다.

4. 事務副總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事務總長 有故時에는 序列에 따라 事務總長 職務를 代行한다.

5. 局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各各 말은 部署의 實務를 掌管한다.

6. 副局長는 局長를 補佐하고 實務의 責任을 진다.

7. 局委員은 局長, 副局長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다만, 各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8. 監事는 本會의 財政執行狀況과 運營全般을 監査하고 運營委員會와 定期總會에 이를 報告한다.

다만, 監事는 各及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9. 顧問과 諮問委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本會 發展을 爲하여 助言을 한다. 다만,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第六章 任員會

第21條(構成) 任員會는 會長을 비롯한 全任員으로 構成한다.

第22條(召集) 任員會는 다음 各項에 該當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在籍任員 過半數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第23條(成立과 議決) 任員會는 在籍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任員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4條(議決事項)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運營委員會에 上程할 議案

2. 運營委員會로부터 委任받은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4. 本會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해 必要한 事項

第七章 青年會

第25條(名稱) 本會에 青年會를 組織하고 名稱은 海州崔

氏 中央青年會라 칭한다.

第26條 (目的) 中央青年會는 門中 차세대의 주체로써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본회운영의 계승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7條 (構成) 青年會는 門中の 만 60세 미만의 남녀 청년으로 조직하며 해당자는 모두 회원이 된다.

第28條 (運營) 青年會는 본회의 지도아래 事務總長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따르는 규정이나 세칙은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第八章 財政

第29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任員(顧問、會長團、監事、諮問委員、局長團) 및 運營委員 義務負擔金

2. 會員의 特別贊助金

3. 회원제를 실시하여 회원 가구당 일정금의 회비 징수금

4. 貸貸收入 등 수익사업 이익금

5. 其他 收入金

다만, 義務負擔金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第30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同年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31條 (會計監査) 本會의 會計監査는 監事가 每會 期末에 監査를 하여 運營委員會에 이를 報告 한다.

第32條 (資金의 團體性) 本會의 모든 基金과 資産은 本會의 名義로 한다.

附 則

1. 本會 創立當時의 會長團은 創立總會에서 選出한다.

2. 本會則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2. 10. 23)

3.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3. 10. 29)

4.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 3. 30)

5.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2. 12. 13)

6.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5. 3. 18)

7.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7. 12. 7)

8.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3. 3. 21)

9.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4. 3. 26)

10.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5. 12. 8)

11.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6. 3. 23)

12.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6. 12. 22)

13.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8. 12. 19)

14.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9. 3. 27)

15.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1. 12. 9)

16.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3. 12. 20)

17.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5. 12. 18)

18.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9. 12. 13)

해주최씨대종회 旗 및 휘장 해설

기

초기 대종회기

대종회에서 우리 해주최씨를 상징하는 대종회 기(旗)를 제정하기로 제33회 운영위원회(1996. 3. 30.)에서 결의하여 제정위원회(愚 수석부회장, 昌浩·宗植 부회장, 起

鎬·雲植·康賢 자문위원, 承君 간사장)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宗植(대종회부회장 겸 인천지회장) 종친이도 안한 원안을 일부 다듬어서 제정하였다.

사각형의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에 사선을 그어 삼각형모양으로 좌측상단은 청색, 중앙은 황색, 우측하단은 홍색이며 중앙의 월계관은 녹색이고 월계관 안의 문헌(文憲)이라는 글자와 하단의 해주최씨대종회(海州崔氏大宗會)라는 글자는 백색이다.



초창기 대종회기

개정 대종회기

제 49회 운영위원회(2003. 11. 28.)에서 해주씨씨를 상징하고 문헌공 선조님의 후예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게 하는 뺏지(휘장)를 제작하여 후손들이면 누구나 착용하고 다닐수있도록 하자는 결의에 따라 휘장 심사위원회(존칭 생략—吉坡 承君 愚 乙善 道植 仁範 英喆 成豪 榮吉)를 구성하여 2004년 2월 26일 접수된 7점의 도안을 심의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같은해 3월 12일 추가접수된 도안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도안을 확정하였다.

휘장(뺏지)도안 해설

일반 휘장(뺏지)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상징물(象徵物)로 바뀌는 현상이 두드러져 특히 종친회와 같은 조직의 휘장(뺏지)은 구체적인 상징물이 적절하다고 보아 도안했다.

① 도안의 특징.. 휘장아래 부위에『海州崔氏』를 명기하여 누구나 쉽게 해주최씨임을 알게 했으며, 뺏지를 달고 있는 자신도 해주최씨임을 자각할수 있도록 했다.

② 방패모양 안의 양각된『文』字는 문장(文章)을 금수(錦繡)라 이르신 문헌공(文憲公) 崔冲 선조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은 명망(名望) 높은 문반(文班)의 후손임을 모두가 자긍(自矜)하게 하고 영원토록 학문(學問)을 숭상(崇尚)하는 氏族임을 상징하였다.

③ 보리수가 방패모양안에 양각된『文』字를 떠 받들게 하였는데 보리수는 성공과 승리를 기리는 뜻이

있어서 해주최씨는 문(文)을 받들어 성공한 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④ 방패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문임을 상징하였다.



대종회 휘장



개정 대종회기

대중회를 이끄는 임원 및 운영위원

大宗
會長



昌燮
(縣監公派)

名譽
會長



順炫
(縣監公派)

首席
副會長



龍燮
(典翰公派)

常任
顧問



元植
(佐郎公派)



萬基
(校理公派)



承君
(佐郎公派)

顧問



康勳
(縣監公派)



奉燮
(典翰公派)



澄植
(大寧君派)



昌浩
(執義公派)



重極
(縣監公派)



殷淳
(佐郎公派)



秉倫
(判司僕寺公派)



公在
(進士公派)



圭哲
(承旨公派)



煒正
(承旨公派)



鍾瑯
(大寧君派)

副會長



炳一
(佐郎公派)



在湘
(典翰公派)



秉基
(執義公派)



重泰
(縣監公派)



甲壽
(佐郎公派)



現鎭
(文貞公派)



南用
(承旨公派)

鍾健
(校理公派)義光
(典翰公派)赫壽
(佐郎公派)永秀
(生員公派)岩松
(承旨公派)泳幸
(承旨公派)榮基
(佐郎公派)承男
(佐郎公派)健植
(佐郎公派)占澤
(縣監公派)東錫
(承旨公派)鍾惠
(進士公派)載豐
(海陵君派)章鎬
(文貞公派)仁植
(進士公派)仁範
(僕射公派)雲善
(縣監公派)在三
(縣監公派)英喆
(佐郎公派)昌植
(承旨公派)昌煥
(佐郎公派)

監事

英勳
(佐郎公派)英傑
(典翰公派)諮問
委員權壽
(佐郎公派)昌燮
(佐郎公派)孝善
(縣監公派)在根
(縣監公派)奎興
(文貞公派)宗壽
(佐郎公派)鍾秀
(校理公派)相俊
(文貞公派)成豪
(進士公派)

執行部

康民
事務總長(縣監公派)漢泰
事務副總長(海陵君派)重暎
事務副總長(佐郎公派)在晩
總務局長(縣監公派)文種
總務副局長(縣監公派)永哲
財務局長(典翰公派)康浩
財務副局長(縣監公派)京鎬
組織局長(文貞公派)喆叟
組織副局長(典翰公派)光柱
IT事業局長(承旨公派)松鎬
IT事業副局長(典翰公派)泳喆
弘報局長(承旨公派)炫洙
弘報副局長(縣監公派)光一
宗務局長(佐郎公派)重勳
宗務副局長(佐郎公派)義壽
青年局長(佐郎公派)珉壽
青年副局長(佐郎公派)重淑
女性局長(佐郎公派)癸淑
女性副局長(海陵君派)

事務局

彰淳
事務局長(海陵君派)運營
委員甲鉉
(承旨公派)康植
(承旨公派)康浩
(領議政公派)啓禎
(海陵君派)國鎭
(生員公派)光星
(佐郎公派)光哲
(佐郎公派)光喆
(佐郎公派)光鎬
(佐郎公派)光鎬
(典翰公派)基南
(執義公派)達壽
(佐郎公派)達泳
(大寧君派)



德壽
(佐郎公派)



德鎬
(典翰公派)



道鉉
(海陵君派)



東根
(縣監公派)



東基
(佐郎公派)



東柱
(縣監公派)



東鉉
(承旨公派)



明根
(佐郎公派)



明壽
(佐郎公派)



文老
(文貞公派)



文植
(佐郎公派)



文源
(書雲副正公派)



敏壽
(佐郎公派)



炳甲
(海陵君派)



秉珠
(佐郎公派)



炳晉
(進士公派)



實圭
(司正公派)



尙出
(佐郎公派)



善鎬
(司正公派)



成鎬
(典翰公派)



承律
(大寧君派)



承烈
(佐郎公派)



承烈
(承旨公派)



時榮
(承旨公派)



永國
(書雲副正公派)



永洙
(佐郎公派)



榮植
(佐郎公派)



英泰
(司正公派)



榮桓
(佐郎公派)



五炫
(縣監公派)



玩勳
(執義公派)



湧求
(佐郎公派)



龍得
(佐郎公派)



龍變
(進士公派)



云錫
(縣監公派)



仁求
(佐郎公派)



仁秉
(文貞公派)



一變
(判司僕寺公派)



將變
(佐郎公派)



章變
(典翰公派)



章鎬
(進士公派)



在杰
(典翰公派)



在根
(典翰公派)



在明
(佐郎公派)



在錫
(佐郎公派)



在星
(文貞公派)



在殷
(典翰公派)



在点
(縣監公派)



在俊
(典翰公派)



濟殷
(文貞公派)



点變
(縣監公派)



正彦
(典翰公派)



正休
(承旨公派)



鍾完
(領議政公派)



鍾福
(校理公派)



鍾澈
(縣監公派)



鍾哲
(佐郎公派)



宗泰
(佐郎公派)



周鎬
(典翰公派)



俊變
(佐郎公派)



濬壽
(佐郎公派)



俊榮
(大寧君派)



重基
(縣監公派)



重善
(佐郎公派)



鎮變
(佐郎公派)



鎮鎬
(書雲副正公派)



辰鎬
(縣監公派)



昌變
(文貞公派)



昌旭
(佐郎公派)



昌煥
(監察公派)



昌熙
(典翰公派)



天在
(進士公派)



春基
(佐郎公派)



忠次
(佐郎公派)



泰燮
(佐郎公派)



泰植
(佐郎公派)



泰一
(典翰公派)



漢燮
(佐郎公派)



韓永
(典翰公派)



睨植
(承旨公派)



弘善
(縣監公派)



洪燮
(佐郎公派)



孝琮
(縣監公派)



興善
(監察公派)



熙燮
(文貞公派)



安賢淑
(縣監公派) 康民(강민) 妻

全國宗親會現況
전국 종친회 현황

光州全南道宗會(1983.11.5.創立)

회장..영행

수석부회장..병관

상임부회장..종주

총무부회장..상학

고문..남현, 충호, 재형, 재풍, 수현, 성현, 상호,

순종, 재상, 환식, 윤석, 용주

부회장..영식, 한기, 수경, 일용, 영학, 진호, 상국,

장현, 익주, 승만, 영운, 재운, 승주, 재원,

영용

총무이사..유식

재무이사..병국

감사..재점, 영훈

禮山支會(1984.4.29.創立)

회장..학수

고문..승우, 금중, 봉희, 병권

부회장..동진, 영화, 기섭, 인섭, 홍식

감사..광우

사무국장..광선

仁川支會(1995.5.28創立)

회 장: 일섭

간사 장: 광철

大田忠淸支會(1991.4.創立)

회 장: 기현

총 무:

副提學公宗會(1999.創立)

회 장: 영수

고 문: 강훈, 순현, 원식, 승균, 창섭, 갑수, 공재,

중극, 광서, 인식

부회 장: 중태, 건식, 종덕, 용섭

감 사: 중영, 장호

총 무: 대식, 국진

校理公派宗親會(1968.5.10.結成)

회 장: 종건

감 사: 경근, 병학

총 무: 영철

司正公派宗親會(2006年結成)

회 장: 선호

고 문: 세진

부회 장: 정배

이 사: 영태

감 사: 경배

총 무: 진범

執義公派宗親會(1970.7.12.結成)

회 장: 병기

총 무: 완훈

縣監公派宗親會(1970.7.12.結成)

회 장: 중태

고 문: 순현, 창섭, 강훈, 중극, 중화, 재삼

부회 장: 점택, 중기

운영위원: 재점, 점섭, 종철, 상순, 정수, 재근, 윤선,

강민, 강수, 문중, 홍선, 우선

감 사: 재만, 홍선

총 무: 윤종

佐郎公派 監察公後孫宗親會(1970.7.12.結成)

회 장: 건식

고 문: 승균, 윤식, 광서, 은순, 달수

부회 장: 준수(수석), 영기, 중선, 용득, 재명, 진동

감 사: 영수, 중수

사무국장: 민수

進士公派宗親會(1997.4.結成)

회 장: 종덕

고 문..공재
명예회장..인식
총 무..천재

典翰公派宗親會(1999.10.16. 結成)

회 장..덕호
총 무..종호

判司僕寺公派宗親會(1986. 結成)

회 장..병희
총 무..병환

承旨公派宗親會(2016.10.10. 結成)

회 장..암송
고 문..남용, 동석, 재형, 창식
부회장..병도, 수경, 종흠, 백휴, 판규
감 사..시영, 경휴
총 무..광주
재 무..승열

將仕郎公派宗會

회 장..상선
총 무..

海陵君派宗親會(2004.6.22. 結成)

회 장..재풍
부회장..계정, 도현, 은섭
감 사..주현, 한태
사무국장..성기
사무부국장..승원

僕射公派宗親會(1985.3. 結成)

회 장..인범
총 무..인영

領議政公派宗親會

회 장..종민
총 무..강호

司正公派 海州두동리 宗會(2017.10.8. 結成)

회 장..권영
총 무..

校理公派 江華仙源 宗會(1952.1. 結成)

회 장..시영
총 무..병구

文貞公派 益山 宗會(1985. 結成)

회 장..병용

감 사..일응
총 무..병기

文貞公派 묘장면 宗會

회 장..근현
총 무..준형

文貞公派 수란 宗會(1955.11.7. 結成)

회 장..재성
부 회 장..홍섭
감 사..재오,봉호
총 무..문호

文貞公派 洪城 宗會(1986. 結成)

회 장..효갑
총 무..덕중

文貞公派 洪安松 宗會(1989.11. 結成)

회 장..길로
총 무..형로

文貞公派 장혁(安城) 宗會

회 장..규홍
총 무..태성

文貞公派 소사 宗會(2018.2.26. 結成)

회 장..봉섭
고 문..병무
부 회 장..병권
감 사..병만,홍섭
총 무..병인

文貞公派 堤川 宗會(2017.7.25. 結成)

회 장..병주
총 무..

文貞公派 合德 宗會(1900. 結成)

회 장..제은
총 무..제국

文貞公派 구정리 宗會

회 장..희섭
총 무..문로

大寧君派 洪川 宗會

회 장..재철
총 무..재옥

大寧君派 仁擎(내촌) 宗會(1965. 結成)

회 장..영현

고 문..재규
부 회 장..승춘, 성현

감 사..부현
총 무..승봉

大寧君派松山宗會(1955. 結成)

회 장..달영
고 문..두영
총 무..교영

大寧君派禮山宗會(1978. 7. 29. 結成)

회 장..양진
고 문..용진, 형식
부 회 장..준일, 호진
간 사..영목
총 무..형석

大寧君派平北定州宗會(1988. 10. 1. 結成)

회 장..춘해
총 무..춘선

書雲副正公派古邑宗會(1998. 11. 15. 結成)

회 장..문원
총 무..용하

書雲副正公派一東宗會(1980. 3. 結成)

회 장..병덕
총 무..병관

書雲副正公派驪州宗會(1990. 結成)

회 장..진호
총 무..태원

縣監公派康津宗會(1984. 3. 結成)

회 장..재삼
대 종 손..진호
고 문..순현, 상국, 윤석, 점섭, 인섭, 창섭
부 회 장..재민
감 사..동근, 정수
총 무..재점

縣監公派長平宗會(1979. 結成)

회 장..영섭
총 무..재근

縣監公派金浦宗會(1970. 11. 結成)

회 장..중태
종 손..강훈
부 회 장..운선, 중기
이 사..강현, 문중, 강천, 강진, 영길, 중육, 강수,

우선, 홍선 1, 홍선 2, 중각
전무이사..윤종

縣監公派三千浦宗會(1980。結成)

회 장..재만
총 무..재윤

佐郎公派參判公宗會(1971。11。23。結成)

회 장..혁수
고 문..관수
부 회 장..은섭

이 사..명수, 영식, 광재, 유풍, 승욱, 광철, 태수,

충차, 재석, 재웅, 진학, 영기, 중선

자 문..달수, 원식, 재현, 병일

감 사..영훈, 영수

사무국장..중영

佐郎公派雙栢堂後孫宗會(1987。結成)

회 장..영훈
총 무..재석

佐郎公派默守堂後孫楊州宗會(1971。結成)

회 장..부섭
고 문..승두, 승진, 병진
부 회 장..광식, 성식

감 사..대섭, 영식
총 무..재명

佐郎公派默守堂後孫新平宗會(1960。結成)

회 장..준섭
명예회장..영배
고 문..순섭
부 회 장..용섭
감 사..왕섭
이 사..건섭, 금섭
총 무..우섭

佐郎公派默守堂後孫公州宗會

회 장..호식
총 무..선식

佐郎公派九里宗會(1994。1。結成)

회 장..종수
총 무..찬수
재 무..낙수

佐郎公派金浦宗會(1983。結成)

회 장..중선
고 문..병일
부 회 장..중근, 중남

감 사..중훈, 춘기

이 사..병춘, 영기, 준기, 중숙, 정수

총 무..중영

서 기..동기

佐郎公派 富川 宗會(1995.3. 結成)

회 장..용득

부 회 장..영화

총 무..영철

佐郎公派 華川 宗會(1986. 結成)

회 장..종모

명예회장..기홍

총 무..문환

佐郎公派 加平雪岳 宗會

회 장..성진

부 회 장..재규, 성환, 재원

이 사..인철, 재만

총 무..강진

佐郎公派 文谷 宗會

회 장..승열

총 무..영식

佐郎公派 진접 宗會(1970. 結成)

회 장..광건

총 무..광복

佐郎公派 公州(도정포) 宗會

회 장..윤식

총 무..선식

佐郎公派 寺谷 宗會(1975. 結成)

회 장..준원

총 무..

佐郎公派 廣川 宗會(1987.4. 結成)

회 장..광성

명예회장..경수

부 회 장..광주

감 사..대길

총 무..진문

佐郎公派 結成 宗會(1950. 結成)

회 장..경수

명예회장..광성

고 문..광태

총 무..덕수

佐郎公派 後寺 宗會

회 장..광재
총 무..학수

佐郎公派 川北 宗會(1909.9. 結成)

회 장..은섭
부 회 장..성원
총 무..재웅

佐郎公派 錦山 宗會(1989. 結成)

회 장..호준
총 무..

佐郎公派 浦項 宗會(1987.5.22. 結成)

포항총회 청년회장..원수

佐郎公派 大邱 宗會

회 장..진환
부 회 장..두원
총 무..진홍

佐郎公派 德山 宗會(1987.3. 結成)

회 장..진식
부 회 장..영식, 환식
감 사..성식

총 무..모식

佐郎公派 永川 宗會

회 장..세웅
총 무..용구

佐郎公派 義城 宗會(1983.1. 結成)

회 장..종태
부 회 장..진덕
감 사..종문
총 무..상태

佐郎公派 漆谷 宗會(1935. 結成)

회 장..은순
명예회장..경현
고 문..의현, 형순

부 회 장..영화(재무담당)

감 사..영진
이 사..영순, 영화, 경현, 영길, 덕순, 사현, 창환
총 무..영순

佐郎公派 金谷 宗會(2000. 結成)

회 장..금식
총 무..광돈

佐郎公派 龍仁宗會(1987.1.1. 結成)

회 장..태섭

총 무..효섭

佐郎公派 참판공랑계 진천宗會

회 장..달수

고 문..광서, 관수

총 무..명수

生員公派 黃海道海南宗會(1934.10. 結成)

회 장..승학

총 무..

生員公派 保寧宗會(1975. 結成)

회 장..성진

부회 장..재국

총 무..재중

生員公派 醴泉宗會(1978. 結成)

회 장..영수

부회 장..두진

총 무..장석

生員公派 蔚珍宗會(1984.6.17. 結成)

회 장..장석

부회 장..극주, 기주
총 무..호원

進士公(垠)派 唐津宗會(1985.1.15. 結成)

회 장..종덕

부회 장..천재(수석), 무성, 치재

감 사..천원, 종식

총 무..천재

進士公(垠)派 聞慶宗會(1985. 結成)

회 장..인식

총 무..용섭

進士公(尹望)派 潭陽宗會(1967. 結成)

회 장..재풍

명예회장..낙현

고 문..재기

부회 장..현철

감 사..승호

이 사..한진, 종철, 종대

총 무..현철

進士公(尹望)派 高興宗會

회 장..호영

총 무..정수

典翰公派 忠貞會(1985. 結成)

회 장.. 재규

감 사.. 경섭

총 무.. 상호

典翰公派 만취공(晩翠公) 後孫宗會

회 장.. 재근

고 문.. 봉섭, 재후, 재상, 재준, 광호

사무국장.. 용섭

典翰公派 수양공 後孫宗會

회 장.. 재근

고 문.. 용섭, 재후, 재준

총 무.. 선호

典翰公派 城山(陰城) 宗會(1965. 1. 結成)

회 장.. 민섭

총 무.. 재운

典翰公派 德山 宗會(1961. 1. 結成)

회 장.. 재환

총 무.. 순모

典翰公派 洪成(흥동) 宗會(1980. 結成)

회 장.. 연섭

총 무.. 찬부

典翰公派 南村 宗會(1961. 3. 結成)

회 장.. 의광

총 무.. 정언

典翰公派 淸州서원 宗會(2018. 2. 28. 結成)

회 장.. 경주

고 문.. 승환

부회장.. 창기

감 사.. 경태

총 무.. 광섭

典翰公派 中原(淸州) 宗會(1980. 結成)

회 장.. 재훈

명예회장.. 준섭

고 문.. 상기(재상)

부회장.. 응기(재응)

감 사.. 재호

이 사.. 진호, 창호, 광호

총 무.. 재인

典翰公派 淸原(분령) 宗會

회 장.. 상섭

총 무.. 병호

典翰公派佛智宗會

회 장..덕호
부 회 장..재봉
총 무..종호

典翰公派粹和公宗會(1991. 結成)

회 장..태인
이 사..중호、송호、정호
감 사..태노
총 무..송호

典翰公派靈岩鳩林宗會(1935.12.10. 結成)

공사원..종호
유 사..연호

承旨公派珍島宗會

회 장..기남
총 무..기생

承旨公派盈德宗會(1958. 結成)

회 장..백휴
명예회장..재휴
고 문..학술
부 회 장..기용
감 사..병진、현휴

이 사..병휴
총 무..경휴、도휴

承旨公派和順宗會(1983. 結成)

회 장..병도
총 무..영식

承旨公派寶城宗會(1988.3. 結成)

회 장..수경
고 문..성현
부 회 장..일용
총 무..영옥

承旨公派務安(석산)宗會(1945.11. 結成)

회 장..
총 무..범석

承旨公派光州(오산)宗會(1983.11. 結成)

회 장..관규
부 회 장..병래
총 무..현기

承旨公派谷城宗會

회 장..일병
총 무..

承旨公派 羅州 宗會

회 장..

총 무..연남

承旨公派 永同 宗會

회 장..종흠

총 무..형식,영식

海東孔子崔冲先生宗慕會

회 장..종주

사무국장..한기

監察公派 咸平 宗會

회 장..규현

총 무..용주

재 무..대헌

監察公派 安城 宗會(1993. 結成)

회 장..창환(진백계)

진혁계 회장..춘선

진혁계 총무..승구

監察公派 高城·泗川 宗會

회 장..

총 무..원석

監察公派 鎭海 宗會

회 장..한숙

총 무..태식

監察公派 晉州·금곡 宗會

회 장..재관

총 무..종길

監察公派 上里 宗會(2011. 結成)

회 장..주갑

고 문..윤길

부회장..홍갑,귀증

총무이사..명길

재무이사..동완

감 사..행철

監察公派 高陽 宗會

회 장..규현

총 무..

小尹公派 반곡 宗會

회 장..주석

총 무..종보

海陵君派 一山宗會

회 장..승관

총 무..승원

海陵君派 水原·華城宗會(1993.12. 結成)

회 장..도현

총 무..

海陵君派 益山宗會

회 장..은섭

부 회 장..기호

감 사..기문, 기은

이 사..수환, 창옥, 기옥

총 무..성기

海陵君派 夫餘宗會(1982. 結成)

회 장..계정

부 회 장..성근

총 무..홍희

재 무..하근

海陵君派 德山宗會(1960. 結成)

회 장..원식

총 무..병기

坡州地域宗親會(1989. 結成)

회 장..봉현

이 사..재준

총 무..문수

長成地域宗親會

회 장..영진

총 무..

瑞山地域宗親會(1987.8.1. 結成)

회 장..정식

총 무..병무

唐津地域宗親會(2015. 結成)

회 장..달영

고 문..공재, 두영

부 회 장..종덕, 종갑, 창길, 교영, 순섭

감 사..천원, 윤영

총 무..천재

天安地域宗親會(1993.3.27. 結成)

회 장..인보

총 무..선규

釜山地域宗親會(1992.10. 結成)

회 장..대호

고 문..홍국

총 무..창국

江原地域宗親會(1990. 結成)

회 장..재철

고 문..재선

부 회 장..문식

총 무..재옥

寧越地域宗親會(1996.10. 結成)

회 장..준영

총 무..승수

城南地域宗親會(1995.4.10. 結成)

회 장..승열

牙山地域宗親會(1982.4.29. 結成)

회 장..

총 무..명호

堤川丹陽地域宗親會(1993.12. 結成)

회 장..병주

총 무..광열

義城地域宗親會(1983.2. 結成)

회 장..종태

부 회 장..진덕

감 사..종문

총 무..상태

羅州地域宗親會(1995.3. 結成)

회 장..진구

부 회 장..동식

총 무..장선

해주최씨대종회 역대 회장 및 임원



在 衡

(文貞公派)

初代, 2代, 3代

재임기간 1983.3~1989.3

수석부회장 : 길준(2代~)

사 무 총 장 : 승군

사 무 국 장 : 병필



元 植

(佐郎公派)

4代, 5代, 6代

재임기간 1989.4~1995.3

수석부회장 : 길준(~5代),
만기(6代)

사 무 총 장 : 승군

사 무 국 장 : 병필(~5代),
형식(6代~)



俊 基

(校理公派)

7代

재임기간 1995.4~1997.3

수석부회장 : 우

사 무 총 장 : 승군

사 무 국 장 : 형식



吉 竣

(校理公派)

8代, 9代

재임기간 1997.4~2001.3

수석부회장 : 우

사 무 총 장 : 순현

사 무 국 장 : 형식

**萬基**

(校理公派)

10代, 11代

재임기간 2001.4~2005.3

수석부회장 : 승군

사무총장 : 순현(~10代),
도식(11代)

사무국장 : 형식

**箕善**

(縣監公派)

12代, 13代, 14代

재임기간 2005.4~2011.3

수석부회장 : 순정(~13代),
순현(14代~)

사무총장 : 창섭

사무국장 : 창순

**承君**

(佐郎公派)

15代, 16代

재임기간 2011.4~2015.3

수석부회장 : 순현(~15代),
창섭(16代~)사무총장 : 창섭(~15代),
영철(16代)

사무국장 : 창순

**順炫**

(縣監公派)

17代, 18代

재임기간 2015.4~2018.12

수석부회장 : 창섭

사무총장 : 상준

사무국장 : 창순

**昌燮**

(縣監公派)

19代, 20代

재임기간 2019.1~현재

수석부회장 : 용섭

사무총장 : 강민

사무국장 : 창순

대종회 실적

享祀奉行
향사봉행文憲影堂奉祭祀
문헌영당봉제사

(문헌영당을 불지로 옮기다)

새 대종회가 출범하고 그 첫 운영위원회에서(1983. 1. 26) 우선 불지의 영당건물을 보수하고, 매년 4월 제 3 일요일에 제사도 올리고 대종회정기총회도 열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서울, 박석고개에 있던 문헌영당(文憲影堂)이 문을 닫게 되자 해주최씨의 계파인 불지종친들이 문헌공, 문화공의 영정과 영당을 안성군 불지로 옮겨와 계속 관리하고 봉사(奉祀)해 왔다. 그러나 조만간에 이농(離農)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었다.

烏山文憲書院大祭
오산문헌서원대제

1992년 10월 11일 숙원사업인 서원 준공식을 올리고, 경향 각지에서 모인 2,300여 명의 종인이 참여한 가운데 감격스러운 첫 문헌서원대제를 올렸다.

始祖奉祀
시조봉사海東祠祭
해동사제

오산의 영정각이 건립됨으로써 문헌영당이 철거문제까지 논의된 바 있었으나, 많은 종친들의 의사가 시조 온(溫)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추계(秋季)에 봉제사하기를 원하여, 그 뜻에 따라 제 27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1993. 11. 20에 대종회 주관으로 첫 향사를 올리게 되었다. 봉사 날짜는 후에 농사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양)4월 셋째 토요일로 바꾸어 올리게 되었다.

始祖靈壇祭
시조영단제

2006년 4월 해동사 건물의 노후(老朽)에 따르는 관리문제와 문헌서원대제 전일(4월 제3 토요일)에 봉사하는 일이 번거롭다는 여론에 따라 오산 영정각 우편에 영단을 설치하고 영단제를 올리기로 하니 해동사(海東祠)는 단게 되었다.

文憲公誕辰千週年紀念事業
문헌공탄신천주년기념사업

대종회 제1회 운영위원회는 문헌공 탄신 천주년 기념사

업(文憲公誕辰千週年紀念事業)을 펼치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文憲公崔冲先生紀念事業會)를 구성하여 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행사준비는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지편찬위원회(宗誌編纂委員會)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文憲公崔冲先生紀念事業會構成 문헌공최충선생 기념사업회구성

회장..이승녕(李崇寧) 전 서울대 대학원장
부회장..박성봉(朴性鳳) 경희대 교수,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

최준기(崔俊基) 한양여자전문대학장,
대중회종지편찬부위원장

이사..유형진(柳炯鎭) 대한교육연합회장

조좌호(曹佐鎬) 성균관대 총장

최창규(崔昌圭) 국회의원

한기언(韓基彦) 서울대 교수

이을호(李乙浩) 국립광주박물관장,

전남대 문리대학장

강주진(姜周鎭) 방송심의위원장

기세훈(奇世勳) 변호사

최재형(崔在衡) 해주최씨대종회장,

변호사

최상업(崔相業) 국회의원

「사단법인 해동공자 최충선생 기념사업회」 발족

대중회는 한편 별도의 법인단체로 「사단법인 해동공자 최충선생 기념사업회」의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2007년도 말에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기선대종회장, 순정수석부회장, 창설사무총장 등 임원이 단체 발족에 따르는 수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2007. 12. 31)

社團法人 海東孔子崔冲先生
사단법인 해동공자 최충선생

紀念事業會 定款
기념사업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해동공자 최충선생기념사업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 에 두고 경기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해동공자 최충선생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민족자주정신과 애민정신

을 온 국민에게 계승시켜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리 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사업
2. 전적, 고문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조사, 정리보존 관리하며 자료의 제공 보급사업
3. 고전국역 간행사업
4. 국내외 유관단체 및 연구자와 교류 및 지원사업
5.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있는 정부의 위탁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관이 해주최씨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한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8 조(회원의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징계)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 7 조의 임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0 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 1.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포함)
- (2) 감사 2인

2. 본회의 임원은 취임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2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에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4 조(임원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8 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본 회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1회의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4. 감사는 위 각항의 감사에서 부당한일을 발견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위 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 1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1월중에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제청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2조(정족수) 1. 총회 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인의 해산, 재산처분을 할 경우에는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이사장포함)구성한다.

제 24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5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7조(재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30조(회계년도) 회계년도의 정부년도에 준한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승인)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3조(설립)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34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관련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 37 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 9 장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 3 조 본 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 4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2011. 11. 03.)

제 5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2020. 01. 14.)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 사업회
이사장, 이사 현황

2007. 12. 6.	법인설립허가 제 2007-01-68호 초대 이사장.. 최기선 이사.. 최원식 최승균 최을선 최순현
2012. 1. 8.	2대 이사장.. 최승균 이사.. 최원식 최만기 최창호 최순현 최기선 최향섭
2016. 1. 8.	3대 이사장.. 최순현 이사.. 최승균 최대식 최공재 최창섭 최동석 최창섭
2020. 1. 8.	4대 이사장.. 최창섭 이사.. 최승균 최순현 최공재 최동석 최창섭 최중대 최운선 최종덕 최갑수 최장호 최현진 최용섭 최혁수 최강민

※이사정원 7인에서 15인으로 변경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 법인설립허가증
최초 법인설립허가증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제 2007-01-68 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1-53 문헌빌딩 4층
- 대표자성명 : 최 기 선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 304-1901
- 주민등록번호 : 450515 - 1157011
- 허 가 조 건 : 이면에 기재함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합니다.

2007년 12월 6일

※ 2011. 11. 2 소재지, 사업 및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변경

경 기 도 지



지역변경 후 법인설립허가증

제2007-01-68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1-53 문헌빌딩 4층
3. 대 표 자
 - 성 명 : 최기선
 - 생년월일 : 1945. 05. 15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 304-1901

4. 사업내용

- 우리 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사업
- 전적, 고문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조사, 정리보존
- 고전국역 간행사업
- 국내외 유관단체 및 연구자와 교류 및 지원사업
-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 있는 정부의 위탁사업 등

5. 허 가 조 건 : 뒷면에 기재함.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종지 편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태호(台鎬) 춘천교육대학장, 문필가
부위원장..준기(俊基) 한양대 교수, 영문학자
학선(鶴璇) 동국대 교수, 국문학자
위 원..영철(永哲) 교장, 승만(承萬) 교장

이섭(理燮) 서울시 교육청

식(植) 조달청 사무관

강현(康賢) 홍익대 교수, 국문학자

기호(起鎬) 상명여대 교수

운식(雲植) 한국교원대 교수

해주최씨 며느리 발족

해주최씨대중회의 참여확대와 발전을 이루고자 핵가족화되어가는 21세기에 해주최문으로 출가한 며느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12월13일 개최한 제82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당사항에 대한 대중회 회칙을 개정하고 대중회 며느리를 발족하였다.

며느리는 자율가입을 원칙으로 만 70세 미만의 종친며느리회원으로 구성하며 대중회 사무총장 관장하에 운영하고 대중회 임원과 동일한 임기제로 표결참가는 불가하다.

崔冲研究論叢 발간
최충연구논총

문헌공 탄신 천 주년 기념으로 박성봉, 김충열, 손인주, 윤사순, 이희덕, 고정식, 박용운, 이을호박사 등 8인의 저명한 사학자들이 집필한 최충연구논총이 발간되었다.

발행일..1984. 11. 25.

발행자..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대표..박성봉(朴性鳳)

편자..경희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발행처..경희대학교출판국

문헌공 탄신 천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문헌공 충선조 주제의 심포지엄이 1984년 12월 1일 서울 엠베서더호텔 대강당에서 내빈과 전국에서 모인 종친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의 심포지엄은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전통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헌공최충기념사업회가 협찬하였는데 행사를 주관한 대중회에서는 청중 동원을 위하여 전국 종친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일반에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문을 게재하여 널리 알렸다.

경오보(문헌공 탄신 천주년 기념) 발간

대중회에서는 경오보(庚午大同譜)를 발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동보편찬규약을 채택하여 보편찬위원회(大同譜編纂委員會)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간사업을 진행하였다.

- ① 1987. 7. 10일자로 주요 일간신문에 대동보발간 사업에 대하여 공고한 후 수단에 착수함.
- ② 1989. 7. 10 대전 회상사(回想社)와 발행계약을 맺고 수단 원고를 제공함.
- ③ 1990. 10. 인쇄 완료. 8권을 한 질(帙)로 하고 그중 제1권은 가장 문헌집(家藏 文獻集)으로 함.

한문으로 된 전래의 가장과 문헌을 국역하기 위하여 길준(吉埈)종친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愚), 강현(康賢), 기호(起鎬)종친을 위원으로 하는 번역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임창순(任昌淳)한학교수와 광주 박물관장 이을호(李乙浩) 박사, 강현(康賢), 기호(起鎬)교수 등 몇 분의 학자가 사료번역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가장과 문헌록의 주요 부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

儒學史上 崔冲의 位相 발간

유학 사상 최충 위상

우리나라 전통유학의 발전과 문헌공 선조의 위상(位相)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최충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성봉)가 주최하여 1998. 11. 18.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저명 학자들의 논문을 단행본(750쪽)으로 엮어 1999. 10. 20. 발행하였다.

대중회 10년사 발간

해주최씨 대중회 10년사 살펴보기

대중회 10년사는 1995년 2월 15일 크라운판 2단 편집, 463쪽으로愚종친이 편집 책임자로서 2년간에 걸쳐 이룩한 紀傳錄이며 출판사는 성지문화사이다. 책 재고가 1140여권 남아있다.

우리 대중회가 1981년 창립의 태동기를 거쳐 10년간 발전해오는 과정을 대중회 10년사에 수록하면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의 난관 속에서 뜻있는 종인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온 열정을 후세에도 이어가야 할 것이다.

10년사의 전면에 16쪽에 달하는 화보를 실어 의욕적인 편집을 하였고, 새로 제작한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정 유화 3점과 문헌공의 일대기와 구재의 사적을 재현한

유화 8점을 게재 하여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던 큰 뜻을 보였다. 유화는

① 문헌공의 出生 ② 장원급제(壯元及第) ③ 출장입상(出將入相) ④ 집무광경(執務光景) ⑤ 계이자시(戒二子詩) ⑥ 임금님이 베푸는 연회장 참석광경(賜國老宴) ⑦ 계장하사(几杖下賜) ⑧ 구재(九齋) 등이다.

책 머리에 김원태(한국 시인협회 부회장) 시인의 문헌공을 찬양하는 장중한 頌功詩는 후손들을 감읍케 하였으며 발간사, 격려사, 편집사에서 대종회의 발전을 돌아보며 후일을祈望하는 간절함을 보였다.

총편에서는 초창기의 편력을 비취볼 수 있었고 당시에 공헌하신 분들의 수고가 낱알이 기록 되었다. 재정이 어려운데도 후일을 위해 주제가 뚜렷한 종지 창간호를 발간한 발자취도 돌아볼 수 있었다.

논단에서는 해동공자의 명호를 받으신 문헌공탄신천주년을 기념하여 20여명의 유명한 석학들이 발표한 심포지움은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었으며 논총은 우리 가문은 물론 고려사의 발전을 비취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되었다.

종회 사업편에는 대종회 운영 규약이 수록되었고, 대동보 편찬과 문헌서원 건립 추진과정이 수록 되었다. 그리고 영정과 벽화의 제작을 위한 내력이 기록 되었다.

부편에는 대종회 사업 일지 및 연표가 수록되었으며 10년사의 편집을 보면 초창기의 우여곡절이 면밀히 기록되어 종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많은 종친들이 헌신 봉

사하여 우리 대종회가 이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종회 10년사는 과거의 자취를 보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지향하는 史籍으로서 중요한 문적이 되었다.

우리 종문이 천 년간 맥을 이어오면서 훌륭한 선조님의 뒤를 이어 대대로 빛나는 역사를 이룩한 傳記錄을 다시 보면서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리를 다하여山高水長의 기맥이 사해에 펼쳐 나가기를 바라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수양열전 발간

수양 열전은 2004년 봄부터 고려 묘지명을 비롯한 자료수집, 분석, 토론 등 집필의 필요성을 공감한 몇몇 종친들이 문덕빌딩에서 譜書 공부를 하면서 편집진을 구성하여 4년에 걸쳐 원고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각고의 수정 보완을 거쳐 2008년 3월에 대종회의 명의로 발간의 결실을 보게 된 寶書이며, 책의 규모는 크라운판(26×19cm)로서 785쪽으로 도서출판 신정에서 간행 되었다.

자료 수집, 연구, 집필, 편집, 보정에 기울인 여러 종친의 땀이 이슬처럼 빛나는 실적을 남김으로서 후손의 사명을 다 하고자 한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수양열전의 집필 동기는 우리문중의 발원지였던 해주수양산을 중심으로 천년에 걸쳐 이룩한 선조의 이름 높은 행적을 밝혀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수양열전은 계보의 재정립, 문헌록의 집성, 새로 발견된

문적의 소개, 경향 각지의 선조 유적과 사당 및 입향조의 편람, 이름을 남긴 선조들의 행공 실적 등을 발굴 보전함에 있었다.

그 첫째 소명은 과거의 한자중심 보서의 활용이 시대적으로 점차 곤란해짐으로 새로운 세대에 맞게 맞도록 보서를 풀이하지 않으면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함이었다.

둘째로는 인물 중심의 열전을 엮어서 문중사를 이해하는 데 기본 소양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로 고려묘지명의 발굴 등으로 기존 보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발생되었다. 이는 다음 보서의 발간 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산재해 있는 문적의 자료들을 한편으로 집성하여 후대에 참고 인용하는 출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로는 IT문명에 맞는 보서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인식에 다 같이 공감하였던 것이다.

여섯째로는 해주 최문은 수양산을 근거지로 독자적 성을 발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므로 선대에 대한 논란을 명백히 밝힌 것도 큰 획이 되었다.

이름 높은 선조를 숭모하며 동문의 핏줄을 존중하는 자긍심으로 서로 화합하여 이룩한 특기할 만한 집필사업이었으며 후세에 문중 발전에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문청공의 삼도부 전면을 실은 것은 앞으로 국문학적으로 좋은 연구의 재료를 전수시키고자 한 것이다.

文興家門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名詩 名文을 별도 목차로 제시하여 후세인들이 문학적 접근을 쉽게하여 열람하고 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家門寶書로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화보집 〈해동공자〉 발간

화보집의 규격은 가로 27cm × 세로 26cm 의 하드양장제본, 컬러 인화지 사진 210컷, 132쪽, 정가 20,000원으로 2010년 4월 25일 해동공자 최충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였다.

실사 촬영, 편집은 한국 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인 광대(좌랑공과 33세손)종친이 약 6년간 솔선 헌신 봉사하며 제작한 자료이다.

고려 초기에 해주를 기반으로 하여 海東孔子와 紅牋七世의 文名으로 名門甲族의 반열에 우뚝 섰던 우리 문중이 천년의 역사를 거쳐 번성해 오던 가운데 세월과 풍운을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곳곳에 種跡을 남기며 발전하고 흥성해 왔다. 그러나 계대를 거듭함에 따라 전수의 맥을 잃고 緣을 망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막고 혈족의 연줄을 지키기 위해 대종회가 구축되고 보서를 편찬하여 종문의 계대 및 계보를 지켜오고 있다.

그간 우리 문중에서는 많은 연구 도서 편찬이 있었으나 경향각지에 보존되어 있는 선조의 유적을 일일이 답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조의 유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화보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 화보집의 시발은 수양 열전의 집필을 위해 현지답사 중에 수집해 둔 필름에다가 그 외 빠진 곳은 별도로 출장하

여 보완한 것이다.

화보의 분류는 사실과 사당을 우선하여, 금석문(비문), 묘지명, 초상, 문적, 유물을 수합하여 실었고, 대중회관에 보존하고 있는 선조의 역사 스토리가 담겨있는 유화도 8점 수록하였다. 화보집에는 후손들이 선조의 유적을 찾고자 할 때 편의를 위해 주소지와 관리인, 소속 소종회 등을 첨부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이 선수학습의 첩경이 되는 시대에 우선 화보로만 보아도 선조에 대한 정감을 얻을 수 있는 화보집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수시로 열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뿌리 문화의 자긍심이 날로 깊어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찾아가는데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제향일도 적혀 있어서 종문 활동에 정보와 자긍심을 주는 훌륭한 화보집이다.

가문의 전통과 유사를 배우는데 스토리텔링의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청백리 최만리 행적 연구 논총(1) 발간

책의 규격은 크라운판 양장본 532쪽으로 도서출판 신정에서 간행한 학술연구서로서 부제학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정가는 20,000원이다.

청백리로서 이름 높은 부제학공 최만리 선조에 대한 역사적 오해는 우리 문중으로서는 매우 가슴아파하던 일이었다. 4백여년 간 존중 받던 명조상이 망국의 한에 얽힌 울분을 토로한 한편의 문서로 인해 억울하게 불명예의 매도를 당한 지 70년이 되도록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한 우리 후손들의 불민은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안이 『수양열전』을 발간한 직후인 2009년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하다가 2009년 8월 대중회의의 제로 상정되어 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중회의의 안건으로 의결되자 곧 연구문제를 분석하고 9월부터 연구설계를 시작하여 예산을 세우고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2009년 12월까지 국어학적 견해, 국사학적 견해, 정치·사회학적 견해의 3분야로 나누고, 다시 각 분야별로 2가지로 세분하여 논문 주제와 집필진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에 6명의 집필자와 5명의 토론자를 정하여 연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10월 26일 세미나 장소를 서울 시청 옆 프레스센터로 계약을 하였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 되었으며, 세미나 참여자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300여분 정도의 종문들이 큰 관심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 되었다.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토론자의 의견을 참고 보완하여 학계에 발표 되었으며, 2011년에 세미나 논문 외에 그

간심학 이승녕박사의 논문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발표한 관련 논문을 수합 총 16편(토론문 포함)의 논문을 수록 편 집하여 2011년 10월 25일 논총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연구로 비롯하여 국사 교과서에 부제학공에 대한 폄하 내용이 교정되었고, 국어 교과서에서도 폄하가 재론 되지 않는 추세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 되어 큰 성과를 얻었다.

이 논총은 앞으로 후손들은 물론 학계에 널리 보급되어 학술 연구 자료로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머 리 말〉

역사의 기록은 진실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관점에 서 흥미로운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현재라는 시대의 주인공은 늘 바뀌어가고 시대적 관점도 변화라는 물결과 가치관을 따라 역사 이해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역사는 온고지신이라는 전통적 가치 창조 를 존중하고 후세에 참된 교훈이 되기 위해 객관성을 유지 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공자가 《春秋》를 남기고 떠난지 오 백년 뒤에 나타난 사마천이 사록을 다시 정리할 때 성현의 이름으로 남긴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증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직접 유적지를 돌아보며 기록과 대조해 보는 수고 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관의 책임과 도리가 막중함을 보여준 사록편찬의 전범(典範)으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역사는 언제나 강자의 편에 맞추어 기록되거나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학문에서 정신문화적 자립을 이루기 전 에 일제의 신민사관의 정략적 잔재가 곳곳에 남게 된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근대화에서 뒤진 우리의 역사는 왕조사관에 서 벗어나 역사의 주체를 대중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방이 된 지도 이제 70년이 가까워 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흔적이 있다면 걸러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논총의 내용은 한글이 창제 된 지 5백년 후, 우리의 역사학이 근대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던 불행했던 시대에 민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세종과 한글의 위대함을 드높이는 과정에서 논핵(論劾)된 최만리와 갑자상 소를 둘러싼 논지를 중심으로 의문을 풀어보고 바로 잡을 문제가 있는지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최만리와 갑자상소에 얽힌 문제가 당시 한글 창제의 과정 과 시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해결 되었는가, 당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한글 반포 후 한글의 발전 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은 무엇인가, 논란의 중심에 선 최만 리의 인품과 행적은 어떠했는가, 일제 치하에서 남긴 오해 와 편견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에도 논란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시비는 이미 1962년 심학 이승녕 박사의 논문 에서 상당히 밝혀졌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신중히 받아들이 지 못하고 오랫동안 왜곡된 견해가 봇물 번지듯 거름 없이

전수되어 왔다.

본 연구논총의 편집은 본 논제를 선각자적 입장에 길을 밝힌 심약 선생의 논문을 서장에 필두로 신고, 제2장에는 2010년 10월 26일,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국어문학사적 입장과 국사학적 입장, 그리고 정치·사회학적 평가를 토론문과 함께 신고, 제3장에는 그의 각계에서 수년간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순서없이 신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최만리 선생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연보 및 유고를 실어서 차후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흐르는 물이 맑듯이 학문은 쉽없이, 그리고 성역 없이 재평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걸러낼 수 있다. 국어학사적, 역사학적, 정치·사회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밝힌 본 논총이 한글 창제에 얽힌 비화를 밝히고 지속적인 한글연구 발전에 밑돌이 되어 정론을 세우기가 바란다.

본 논총에 기꺼이 옥고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충문학상 전국 공모전 제정

최충문학상은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오산지부가 주관하여 오산시, 오산시 국회의원, 오산시의회,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단법인 한국예총이 후원하여 전국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공모전으로 개최한다.

제1회 해동공자 최충문학상은 공모를 통해 289명으로

부터 800여 편의 작품을 접수받아 1차,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여 2018년 10월 23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상(오산시장상), 특별상(국회의원상), 최우수상(오산시의회의장상), 우수상(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장려상(최충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상, 오산문인협회장상) 등 총 31명을 시상하였다. 최충문학상은 연1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문헌서원 탐방학교 운영

문헌서원 탐방학교는 오산시 산하의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의 요청으로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산 문헌서원 영정각과 경내에서 2017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수업은 1학과 2학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참가신청을 받아 1일 1학급씩 1주에 2~3회 실시하고 교육은 학부형들로 구성된 나누미강사들이 맡아서 고려시대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과거제도, 최충의 유교적 교육철학을 학습목표로 잡고 서원의 의미와 최충의 교육철학 소개, 고려시대 선비 체험, 고려시대 과거제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나누미강사들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에서 강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종회에서 도 최충선생과 구재학당, 문헌서원의 유래, 시설물 설명 등

을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연간 50여 학급 1,200여명의 신청을 받아 시작하였으나 차츰 지원자가 많아져 연간 60여 학급 1,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도서 간행사업

大宗會十年史

대종회십년사

1995년 2월 15일 대종회장 元植 발행

종지편찬위원장 愚 편저

大宗會三十年史

대종회삼십년사

2013년 4월 15일 대종회장 承君 발행

편찬위원장 順炫, 편집 香燮

해주최씨대동보(庚午譜)의 追譜

추보

상계를 몰라 1990년도에 발행한 경오 대동보에 누락된 많은 종인들을 위하여 추보(追譜)를 발행하였다.

宗誌 및 海州崔氏大宗會報

종지 해주최씨대종회보

창간호.. 1986. 4. 15

회장.. 在衡, 편집.. 台鎬

제2집.. 1992. 7. 15

회장.. 元植, 편집.. 俊基

제3집.. 2001. 3. 30

회장.. 吉埈, 편집.. 愚

제4집.. 2016. 11. 30.

회장.. 順炫, 편찬위원장.. 昌燮,

편집.. 雲善

회보 창간호.. 1983. 6. 10 발행 이후

2004년도까지는 연 1회 발행하고(위원장.. 愚),

2005년도부터는 연 2회 발행하다가 2019

년부터 다시 연 1회 발행(제48호 해주최씨대종회

보.. 2019. 6. 28. 발행)

烏山文憲書院 건립

오산문헌서원

影幀閣 건립

영정각

영정각은 1990년 11월 30일 착공하여 1991년 7월 30일 완공하고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삼위의 영정

을 봉안하였다.

1991년 9월 28일 제22회 운영위원회에서 과거의 서원이나 영당에는 문헌공, 문화공 양위분만 봉안하였으나 오산서원에는 次子이신 휘 유길(惟吉, 상서령)을 모시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文憲書院 건립 문헌서원

좌랑공과 참판공종회(佐郎公派 參判公宗會)에서 1989년 1월 3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내삼미리 소재 7611임 및 753전의 일부 3702평을 문헌서원 부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교하였다.

문헌서원(東廡)은 1992년 5월 1일 기공하여 동년 8월 30일 준공하고 식을 올렸다. 그리고 서원건립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으고, 또 몸소 수고를 하였는데 특히 앞서 애써주신 분들은 대종회장 원식(元植), 종지편찬 위원회부회장 우(愚), 간사장 승군(承君), 재무간사 도식(道植) 그리고 사업간사 창섭(昌燮) 그리고 현장 감독으로 영흠(永欽) 씨 등 제 종친이다.

海東孔子 文憲公 崔冲 동상건립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가 주도하여 해주최

씨대종회 임원, 운영위원, 지역종회, 종원 등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총 157,303,000원의 찬조금을 접수 받아 오산 문헌서원 영정각 앞의 문헌공원 부지 약 100㎡ (30평)를 오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건립하였다.

2018년 10월23일 동상제막식을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 최순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해주최씨대종회 창섭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운영위원, 지역종회 임원, 오산문화원장, 오산시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는데 박상욱 오산시장은 「최충선생은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에서 현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한다」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은 「문헌서원은 황해도 해주에 있던 것을 해주 최씨문중에서 오산에 다시 건립하였는데 해동공자라고 칭송받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이외 오산시의회 의장,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축사를 보내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 동상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동상 제원〉

- 동상높이 .. 3.5 m • 좌대높이 .. 1.68 m
- 총 높이 .. 5.18 m

〈병풍석 제원〉

- 중앙길이 .. 3 m • 좌측길이 .. 2.1 m
- 우측길이 .. 2.1 m • 전체길이 .. 7.2 m
- 중앙높이 .. 2.5 m • 좌측높이 .. 1.95 m
- 우측높이 .. 1.95 m

1. 문헌서원

史略
사략

문헌서원과 대제

1. 의의(意義)

해주 문헌서원은 문헌공 冲을 주벽(主壁)으로 하고 아드님인 문화공 惟善을 배향위(配享位)로 하여 모신 서원이다. 문헌공은 여러대(代)동안 유학의 스승이었고 우리나라의 덕망 높은 先賢이었다. 儒學은 은(殷)나라 기자(箕子) 기원전 800년경)로부터 신라 설총을 거쳐 동방에 전래되었지만 고려시대 문헌공이 다시 중흥시켜 크게 번창하였다. 깊이 연구한 유학지식을 바탕으로 문헌공은 고려 목종 8년(1005년) 갑과에 장원급제한 후 육십 여 연간 다섯임금을 섬기면서 태사(太師) 중서령(中書令) 등 나라 경영에 중심인물로 고려의 문물제도와 왕도정치를 바로 세워 시속(時俗)과 문명을 개화시켰다. 여기에는 유학사상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유학의 정신을 고려 사회생활 전반에 정착시키고 후

대에 전한 유학도통(儒學道統)에 최초가 된 분이 문헌공이다. 그리하여 유학의 儒宗이며 海東孔子로 추앙받게 되었다. 문헌공은 치사(致仕)후에도 九齋학당을 세워 유교교육의 진흥자로서 유학의 발전과 윤리적 생활에 바탕을 둔 자손교 육을 戒二子詩(비롯한 인간교육에 치중하였다. 이 교육제도와 학구열은 이 학당을 통하여 조선시대까지 흘러들어가 국가사회 학풍진작과 문화·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학통을 이은 후학(後學)으로 거유(巨儒)가 된 文安公 김양감, 文成公 안유, 文靖公 이색, 文忠公 정몽주 등을 통하여 주자학, 성리학, 실학으로 연구 발전되면서 집대성되어 학문의 꽃을 피웠고 조선통치 이념에 근간이 되었다. 즉 문헌공의 유학사상과 학풍(學風)이 고려조는 물론 고려를 부정하고 수립된 조선조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실례로 현재 우리중학교 교과서(교학사. 2012. 3 발행 중 2(상) 역사교과서 P119)에 공의 간략한 전기(傳記)는 물론 문벌 갑족으로서 누대에 걸친 후손들의 조정에서 중요정책을 수립 집행한 벼슬살이 현상이 系代表로 작성되어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으며 구재(九齋)의 학생들을 모아 면학케 하였다는 연미정(燕尾亭)·고려고종 31년 1244 창건·조선 영조 20년 1744 중건 강화 월곡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24호)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그 맥이 천년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공의 이러한 업적을 받들고 추모하기 위하여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별세 후 고려조에서는 정종묘정(靖宗廟庭)에 배향되어 숭의전(崇義殿)이 제왕 묘사(廟祀) 때 같은 반열

에서 제사를 모셨고 조선조에서도 조정의 주관으로 치제(致祭)를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여러 후학(後學)과士林들이 자발적으로 향을 올려 제사를 모셨고 우리 宗門 후손들도 앞다투어 奉祀하기에 극진하였다.

해주 문헌서원은 구재학당을 본떠 건축하였으니 전국 인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교육기관이고 그곳에 영당(影堂)이 따로 마련되어 문헌공, 문화공 화상을 봉안한 곳이다. 문헌서원대제는 이러한 경세가(經世家)요 大儒學者이면서 교육자이신 문헌공 부자분을 모셔 놓고 얼을 되새기며 이를 추모하고 그 업적을 명심(銘心)하는 행사가 大祭이고 추모(追慕)에 場이 문헌서원 영당(影堂)이기도 하다.

2. 文憲書院 年譜

문헌서원 연보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유교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육기관인데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이었고 서원은 私學으로서 사설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문종(文宗) 7년(1053년) 우리 선조이신 문헌공 冲이 관직에서 은퇴한 후 九齋學堂을 세워 많은 제자들을 모아 교육시켰는데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 되었으며 이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스승의 호를 따서 문헌공도(文憲公徒)라고 불렀다. 구재학당(九齋學堂)이 서원의 효시가 된 것이다.

6·25 동란 후 남북이 단절되어 우리 세대에서는 해주에

있는 문헌서원의 변천내력을 알수도 볼수도 없어 답답할 뿐이다. 고려 무신난때 문헌공의 문헌들이 모두 소실되어 문헌을 통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다행히 족보1권(가장 문헌)에 산재해 있는 문헌서원(文憲書院)의 기록들을 년도 별로 다시고 쳐 적어 옛 서원의 변천사를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 보고자 한다.

(1) 문헌공 옛 집터에 『해주향교』(學宮)을 세우다.

1440년(세종22년)

문헌공이 출생한 옛 집터는 해주 성북산 밑에 있었는데 창(昶)이 (쌍매당 雙梅堂)고려말 문신(文臣)、시호 文安의 말손자) 해주 목사로 갔다가 통판(通判) 김군자연(金君自衍)과 이곳에 『해주향교』를 세웠다.

(2) 향교 서쪽에 사당을 새로 짓다.

1501년(연산7년)

처음에는 문헌공 부자분을 문묘에(향교) 모시어 제사를 지냈다. 이해에 목사 정성근(鄭誠謹)이 향교를 중수할 때 두분을 제사 지내야 한다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므로 파하고 향교의 서쪽에 사당집채를 짓고 두분을 읊겨 모셨다.

(3) 서원건축의 재정을 마련하다.

1549년(명종4년)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안절사(按折使)로 해서 감

영(海西監營)에 부임하여 문헌공의 유허(遺墟)를 찾아가 사당을 참배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리고 또 명종 임금께 주청(奏請)하여 내려주신 현액(懸額)·일정한 금액(과 토지)으로 서원 건축 재정을 마련하였다.

(4) 문헌당을 소서문 밖으로 옮기고 구재를 모방하여 서원을 건립하다.

1550년(명종5년)

항해감사 주세붕이 문헌당을 지금의 성(城) 소서문 밖(항동)으로 옮기고 왕께 賜額도 청하고 그 당 앞에는 구재를 본따서 서원을 세웠으며 많은 書冊을 비치하고 田民을 설치함. 맨 처음 문헌서원이 건립된 것이다. 문헌당에는 문헌공, 문화공 두분의 神位를 모셨다. 文憲堂이라는 편액(扁額)은 명종대왕께서 특별히 하사하여 주셨다.

(5) 서원을 휴암천(鵠巖川) 위에다 증설하여 옮겨짓다.

1571년(선조4년)

항해도 관찰사(감사)朴承任과 해주목사 韓性源이 서원을 석동(席洞)의 백운봉(白雲峰) 밑 휴암천(鵠巖)·지금의 항해도 봉산(鳳山)의 고호(古湖) 위에다 옮겨지었다.

(6) 문헌서원에서 문헌공을 黜享하려는 계책을 부리다.

1577년(선조10년)

율곡이 문헌서원에서 문헌공을 黜享(黜享)하고 공자의

사당을 만들려하자 본손(本孫) 月潭 滉이 세 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어 그 옳지 않음을 펴서 마침내 율곡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7) 학규(學規)를 지어서 서원 벽에 걸다.

1578년(선조11년)

율곡이 조정에서 물러나 石潭에서 쉬면서 山長이 되어 서원에다가 學規를 지어서 걸고 鄉約(향약)도 지어 매일 학생들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학습하였다.

• 서원의 규모

처음에 지은 서원(1550년) 규모는 명륜당이 4칸이고 동·서재가 각각 3칸, 행랑(行廊)이 5칸이며 부엌 3칸이었을 뿐이고 서원안의 선비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처음에는 여러 고을에서 제도적으로 그 지방 특산물을 거두어 들였다. 원액(院額) 네 글자는(文憲書院) 부사(府使) 류시정(柳時定, 조선인조 때 문신 글씨로 유명) 1596-1658이 왕명을 받들어 써서 바쳤다.

• 증설된 서원(1571년) 규모

사랑집채는 2층 3칸(間)이고 강당이 12칸 서쪽 건물은 낙성재(樂聖齋)가 되고 동재(東齋) 6칸은 대중(大中)과 솔성(率性) 2재(齋)가 된다. 서재(西齋) 6칸은 조도(造道)와 성명(誠明) 2재가 된다. 남재(南齋) 9칸은 진덕(進德)과 경업(敬業), 대빙(待聘), 태화(太和)의 4재(齋)가 된다.

옛 사당집은 전사청(典祀廳) 2칸과 신문(神門)과 협문

(扶門) 1간과 유사방(有司房)、고사(庫舍)와 마구간(馬廐間) 25간에 먹고자는 학생(下齋生) 28인과 관리인(齋直) 21인과 남자종과 여자종 12명이 있었다.

(8) 연안(延安)에 비봉서원을 짓고 문헌공을 모시다.

1596년(선조29년)

황해도 연안에 사는 선비들이 비봉산(飛鳳山) 밑에 사당을 세우고 중국에 주자(朱子)를 주벽(主壁)으로 하고 문헌공과 한훤(寒暄)、율곡을 배향. 1682년(숙종8년)에 飛鳳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음.

(9) 문헌공이 동국선현(東國先賢)으로 뽑히다.

1636년(인조14년)

임금께서 우리나라 선현을 뽑아 아뢰도록 하명하니 재상 김육(金堉)이 예조와 홍문관과 의론하여 고려시대 문헌공으로부터 조선시대이르기까지 56인을 東國先賢으로 抄啓함.

(10) 문헌서원 중수를 청하다.

1673년(현종14년)

황해도 관찰사 尹公容이 長山の 소나무를 재목으로서 원을 중수할 수 있도록 왕께 주청하였다.

(11) 문헌서원 卜定(복정) 지방산물을 얻지로 바치게함(을 혁파함).

1709년(숙종35년)

문헌서원안의 소용되는 물자를 어려움에 나누어 맡겨 거두도록 하여 처음에는 넉넉하였으나 그후 각군에서 바치도록한 토산물 징수제도인卜定을 혁파(1717년)하여 서원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12) 문헌서원의 魚、鹽(어염)을 均役廳(조선시대 관청으로 역(役)을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일을 맡아 봄)에 모두 바치다.

1750년(영조26년)

서원에서 사용하는 물고기와 소금을 대어주던 곳이 모두 균역청이 설치되면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서원의 힘이 더욱 메마르고 황폐해졌다.

(13) 구재기와 구재 유허비를 짓고 세우다.

1796년(정조20년)

후손 수옹(粹翁)이 紫霞洞 구재 遺墟碑文을 짓고 해주 감영 홍양호(洪良浩)가 안절사로 있을 때 山長으로서 九齋記를 지어서 벽에 걸어 놓았고 유허비 銘도 지었으며 후손 영수(永壽)가 유허비를 세웠다.

(14) 문헌서원 중수하고 묘정비를 세우다.

1863년(철종14년)

후손인 희동(義東)이 서원을 중수하고 묘정비를 세웠다. 提學 曹錫雨가 상량문을 지었으며 李裕元(철종때 영의정)이 묘정(廟庭) 비문을 지었다.

(15) 문헌서원이 철폐되다.

1871년(고종8년)

서원이 철폐되었다. 이 뒤로는 후손들과 사림들이 추모의 예를 아주 중단하지는 못하여 매양 영당(影堂)에서 봄과 가을로 제사를 모시면서 끊임없이 학문도 강(講)을 계속하였다.

(16) 임금이 문헌공의 흥학(興學)에 감탄하시다.

1888년(고종25년)

임금님이 『고려사』를 보다가 문헌공께서 학문을 일으킨 공이 크심을 크게 찬탄하시고 그 후손 昌溥(창보)에게 별시문과를 베풀어 주시고 곧 注書를 제수함.

(17) 사림(士林)들의 많이 보조로 서원을 증건하다.

1910년(융희(순종때연호)4년, 왜정(倭政))

선비들이 모여 영당에 위판(位版)·神位 이름을 적은 나무패(을) 모셔두는 것이 옳지 않으니 사당의 본채「正廟」와 강당을 새로 짓자고 결의하고 많은 경비를 모금하여 보조하였다. 후손 규환과 재진, 덕선이 주관하여 사당 본채 3칸과 강당 8칸을 세워 3월 첫 丁日에서 원에 처음으로 제사를 모셨다.

옛 편액(扁額)도 새로지은 사당본채에 걸었다. 그 뒤 윤현이 서원의 집채가 옛스럽지 않다고 분개하여 사당 본채를 고쳐짓고 담을 둘러치고 문을 셋을 내니 옛날제도와 꼭 같았다. 근직과 형직이 동쪽 집채 8칸을 세우

고 12徒중 하나인 徐侍郎徒의 후손 서창순과 서만수가 서쪽집채 6칸을 지으니 남재 6칸만을 아직 못세웠을뿐 옛날 문헌서원모습을 거의 회복시켰다.

(18) 문헌서원도 왜정암흑시대를 겪다.

1910~1945년(왜정36년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권이 침탈되어 많은 인력(人力)이 세계대전에 동원되고 곡물도 모두 공출당하여 의식·주생활이 궁핍하게 되니 서원보존이나 향사는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해주최씨 집안의 崇祖정신은 드높아 원거리 후손들도 해주 사당에 가서 제향에 참가하곤 하였다. 당시 모든 건축물은 퇴락하고 문중에 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던 차에 6.25동란이 발발하여 남·북 왕래길이 막히니 옛 문헌서원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사당본채만이 남아 여기에 「문헌서원」이란 편액만이 걸려있는 듯하다. 아마도 현재 사진에 나오는 문헌서원은 화려하고 웅장했던 옛서원은 자취를 감추고 사당본채의 일부만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상정(想定)할 뿐이다.

(19) 서원에 문헌영당을 건립하다.

1957년

6.25동란후 피난나온 북한종친과 남한종친이 합심하여 해주최씨 대종회를 조직하고(1957년 조직, 1959년 해체) 우선 해주문헌서원은 못가니 남한에 문헌영당이라도 건립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奉祀를 하자

는 案을 의결하고 서울시내 갈현동에 부지를 현지에 거주하는 종친으로부터 기증받아 문헌영당을 건립. 문헌공, 문화공 선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올렸다. 그 후에 기증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후손들의 기증 불인정과 도시계획 등의 사정으로 이 영당마저도 철거되었다. 이때 조직된 대종회도 유야무야 와해되고 말았다.

(20) 문헌영당 안성불지로 옮기다.

1960년

서울 갈현동에 세워졌던 문헌영당이 불가피하게 철거됨에 따라 의논 끝에 안성불지로 옮겨 짓기로 결정하였다. 철거된 영당건물 자재들을 불지 종인들이 동리앞에서 현장까지 등짐으로 날라다. 불지영당을 건축하였다. 祭日은 음 10月6日로 정하고(소윤공, 부제학공 시제 전일임) 1960년부터 1982년까지 23년간을 불지종회 주관으로 문헌영당 奉祭祀를 하였다.

(21) 대종회가 안성불지 문헌영당에 인수하다.

1983년

1982년 10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역사적인 해주최씨 대종회가 탄생되었다. 따라서 불지에서 모신 문헌영당을 1983년에 대종회에서 인수하여 1992년(9년간)까지 매년 4월 제3일요일에 봉제사를 해온 것이다.

(22) 문헌서원을 오산에 새로 건립하다.

1992년

불지영당건물이 전국 종인들이 모이기에 는 비좁고 교통도 불편하며 좁은 부지마저 경사를 이루어 제원(祭員)들이 불편하였다. 게다가 건물도 노후되어 적당한 장소의 영당터를 물색하게 되었다. 마침 좌랑공파 참판공소종중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753-2의 임야 중 3702평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종회에 서원부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어 우여곡절 끝에 대종회 집행부의 큰 노고에 힘입어 오산문헌서원(1992. 5. 1. 착공 1992. 8. 30 준공)과 영정각(1990. 11. 30 착공 1991. 7. 20 준공)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남한에서도 해주문헌서원의 맥을 이은 오산문헌서원이 탄생된 것이다. 자연히 불지영당은 시조를 모시는 해동사(海東祠)로 고쳐 열고 불지영당을 오산문헌서원 영정각으로 옮겨 제향을 모시게 되었다. 이후 제향일은 시조님 영단제와 함께 매년 4월 제4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3) 오산문헌서원이 국토개발계획에 의거 수용당하다.

2009년

한국 L·H(토지·주택개발공사)공사의 오산 내삼미동 아파트 단지개발계획에 따라 문헌서원 건물과 토지 전부가 수용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본 서원을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가계획 개

발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결국 수용되고 말았다. 다만 문헌서원은 헐리어 자취를 감추었으나 영정각만은 계속 향사를 봉행할 수 있도록 존치한다는 당국과 합의를 보아 잘 보존하면서 종진과 다름없이 전국 종친들이 이곳 한자리에 모여 奉祀하고 있다. 문헌서원을 포함하는 2만여 평의 녹지는 문헌공원(文憲公園)으로, 인근의 1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새로 뚫린 6차선의 큰 도로는 문헌공길(文憲公路)로 命名되어 문헌공의 얼은 이 고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신길동 소재 文憲빌딩을 대종회에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文憲빌딩 개관

문헌

대종회에서는 2002년경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에 오산 문헌서원부지가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오산시, 주택공사(이후 LH공사)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헌서원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관련기관의 방침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9년 3월경 영정각의 보전과 영정각을 포함한 주변 관리를 대종회에서 책임지며 그 외 서원 관리사 및 강당건물의 철거와 기타 조경은 신도시개발 계획의 설계에 맞게 조성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27일 제 61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받아 기존의 문헌서원 존치를 위한 대외업무추진을 담당하던 서원대책위원회를 개편하여 문헌서원 보상금 수령 이후를 대비한 대체부지(건물) 확보 및 대종회사무실 이전업무를 담당할 서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원대책위원회〉

- 1 위원장.. 順炫
- 1 위 원.. 元植 承君 昌浩 秉倫 康勳 道植 潁植 鳳燮
- 1 간 사.. 英喆 圭哲 昌燮 龍燮 東壽
- 1 지 원.. 彰淳 사무국장

서원대책위원회에서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 각 방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교통의 문제, 건립자금의 문제, 건물의 사후 관리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의견을 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2009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75소재의 대지 325㎡(98.3평), 건물 949㎡(287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23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7월 1일부터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는데 건물 매입금은 문헌서원의 토지보상금과 부족한 금액은 대종회 보유 유동자산으로 충당하였다.

건물명은 문헌공의 후예라는 뜻에서 문헌빌딩(文憲B/D)이라 명명하였고 4층은 대종회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헌빌딩 구입 이전의 대종회는 운영재정을 충당키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 부담금과 같은 각종 찬조금 등을 거출하여 왔으나 이후에는 문헌빌딩의 일정한 수입으로 대종회 운영이 안정되어 임원 및 운영위원 부담금액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의 때마다 회의 장소 사용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결되었고 회의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대종회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문중의 크고 작은 회의와 만남의 장소가 되어 명실 공히 대종회의 중심점이 되었으므로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종회 발전과 종원 상호간의 종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원 및 청년수련행사

임원진연수회(任員陣研修會)

대종회의 발족 이후, 위에 열거한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 임원들이 지방의 지역종회와 유적지 등을 순회하고 그 결과를 회보에 실어 전국 종친께 알림으로써 地方과 中央, 東과 西를 아우르는 위로와 단합을 도모하였다. 처음에는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간사진을 주축으로 하여 1988년 춘천의 호반에서 열었고, 1992년부터는 「임원연수」라 개칭하여 때로는 고문, 운영위원들까지도 합세하는 큰 연례행사로 발전하였다. 특히 1994. 10. 29/30. 양일간 경북지역의 순회 참배행사는 뜻 깊은 것으로 기록한다.

청년수련회(靑年修鍊會)

문중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선조님들을 숭상하고 그 내력을 밝히며 씨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1회 해주최씨 청년수련회를 1993. 7. 10~11 양일간

제2회 해주최씨 청년수련회를 1994. 9. 24~25 양일간을 각각 오산문헌서원에서 열어 그 이후 연례행사로 실시했다.

機構增設과 사업

기구 증설

중앙청년회(中央靑年會)의 창설

2000년 11월 25일 제43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년회 부활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의한 이후 누차의 회의를 거듭하여 2003년 11월 28일 제49회 운영위원회에 이르러 다음 초대 임원진을 선정하였고, 2004년 8월 21일, 22일에 수련회를 겸하여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발기 대회를 열어 「해주최씨중앙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청년회 발족은 만기(萬基) 대종회장(10, 11대) 취임 후 획기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당시 을선(乙善) 부회장을 비롯한 청장년 임원진의 적극 호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청년회(초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 문..원식(元植),길준(吉竣),준기(俊基),

승군(承君),우(愚),창호(昌浩),을선(乙善)

명예회장..만기(萬基)

회장..성호(成豪,변호사)

부회장..한태(漢泰),영길(榮吉),종수(鍾秀),병비(炳飛),

보식(保植),이현(貳鉉),수재(秀在),상원(相源),

혁준(赫竣),문형(文亨)

감 사..유식(有植)

집행부..총무부장 준영(峻榮),교육부장 재영(宰榮),

홍보부장 진홍(鎭弘),친교부장 경식(慶植)

운영위원..영훈(泳勳) 외 45명

(이상 2005년도 수첩)

2001년 제44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년수련회소위원회

(靑年修鍊會小委員會)를 구성한 이래 청장년수련사업은 연

례행사로 발전해 왔다.

청장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해주최씨 청장년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선조존봉과 해주최씨의 위상을 높이고 해주최씨대중회의 활성화와 종친간의 화목에 기여함은 물론 장차 대중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중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계 청년수련회에 대한 입안 계획 행사를 주관한다.

3. 해주최씨 청소년 교육에 대한 입안 계획 행사를 주관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

에 참여

제5조 (운영원칙) .. 제4조의 사업수행은 대중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실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 회원은 문중의 만60세 미만의 남녀청년으로 한다. 집행부 임원은 20세이상 60세미만으로 하며 회장은 별 의로 한다.

제7조 (권리) .. 회원은 본회칙이 정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범위내에서 본회칙 운영에 참여할 권이를 갖는다.

제8조 (의무) .. 회원은 본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의 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단체) .. 본회는 중앙 청년회 산하에 각 지역 청년회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대종회장이 당연직)
2. 회장 1인
3. 감사 2인
4. 부장 7인이내, 팀장 7인이내(총무, 학생, 직장, 사업, 농어민, 홍보 등...)
5. 회장은 약간인의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6. 회장은 7부장 7팀제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다.

제11조 (선임) .. 회장과 총무행사수석부장은 대종회장이 임명하며, 자문위원은 청년회원 중 회장이 각 계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본회의 예산 및 집행되는 회무를 대종회 사무총장에게 보고

한다.

2. 총무행사수석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청년회 집행부 임원단회의 시 대종회 총장에게 보고한다.

4. 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 행사부장은 본회의 서무전반과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를 팀장과 함께 관장한다.

(2) 기타 각 부장 및 팀장은 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조직을 구성 이끈다.

제4장 임원회

제14조 (구성) .. 임원회는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 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성립과 의결) ..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의결사항) ..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집행부 임원회의에 상정할 의안
2. 대종회 국장단에 상정할 의안

3. 대중회 국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청년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 : 본회의 운영과 사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중회 보조기금
2. 회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9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대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0조 (자금의 단체성) :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본회의 명의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8. 15)
3.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4. 26)
4.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4. 09)

5.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12. 13)

弘報委員會의 창설
홍보위원회

선조님들에 대하여 학계, 정계 및 사회적으로 그릇된 사관(史觀)으로 모독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방책을 강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선조와 가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지를 갖도록 계도할 목적으로 기선(箕善) 대중회장은 기존의 종지편찬위원회를 홍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7. 1. 5. 첫모임)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乙善(부회장)

부위원장 : 順炫(부회장), 瀟植(자문위원)

위원 : 鳳燮, 康勳(각 자문위원),

香燮(文人, 운영위원), 現鎭(운영위원),

榮吉(청년회장), 在晚(총무부국장),

光太(홍보부국장), 勝一(홍보국장)

홍보위원회의 현 사업은 다음과 같다.

會報 발간
회보

종전의 종지편찬위원회의 임무를 계승하여 대종회 회보 등을 발간한다. (乙善 주관)

萬理祖의 甲子疏에 대한
만리조 갑자소

「역사관 바로 잡기」

• 대전일보의 그릇된 기사(2006. 9. 20)

• 정치인 金모 국회의원의 망언(2006. 10. 11)과 동아일보의 「형설수설」란에 잘못된 인용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承祚홍보국장(당시)、榮吉청년국장(중앙청년회장 겸직)、勝一홍보위원 등이 앞장서 올바른 역사를 제시하고 항의한 결과 그들은 자신의 인식이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진심어린 사과문을 보내오기에 이르렀다. (대종회사무국 보관. 대종회 홈페이지)

家門역사의 개발 및 시정사업
가문

새로운 사료(史料)들의 출현으로 선조 및 가문의 역사가
록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요구되어 IT와 도서를 통한

꾸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首陽列傳 발간
수양열전

한글로 풀이한 단행본으로 해주최씨일천년사(海州崔氏
一千年史)、(해동공자의 후예) 수양열전을 발간함.

편집진..康勳、道植、鳳燮、香燮위원
자 문..起鎬

사료수집 및 교정..澄植、現鎭、在晩。勝一、榮吉、

光大、彰淳、康天

주 관..乙善홍보위원장、昌燮 대종회사무총장

海州崔氏大同譜 編纂委員會 規約
해주최씨대동보 편찬위원회 규약

2020(庚子)편

해주최씨대종회(이하 「대종회」라 칭한다)는 2015.
12. 18자 제74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종회 회칙 제4조
5항 문헌간행사업에 의거하여 경오대동보(1990)를 보
완승계하는 편찬사업이 승인의결됨에 따라서 아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사업명칭) 본 사업은 「해주최씨대동보 2020(경자) 편찬 간행사업」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종회에 해주최씨대동보 2020(경자) 편찬위원회를 둔다.

이하 『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위치)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해주최씨대동보 회사무소内に 둔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해주최씨대동보(海州崔氏大同譜)를 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찬위원회

제4조 (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가. (구성) 위원은 각 파, 지역을 대표하는 40명 미만의委員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의 中心기관으로서 대동보 간행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또한 편찬위원회 직속 수단위원이 된다.

나. (임명) 본 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간사진 및 위원은 대종회장이 임명하고, 대종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대종회장이 부위원장 중에서 보임하고, 위원은 지역, 소종회의 추천을 받아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다. (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대동보 발간 시까지

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라. (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안건의 처리 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마.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대종회 부회장단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바. (임무) 본 위원회는 대종회 의결에 의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동보 편찬.
 2. 대동보 편찬에 따른 기본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동보 편찬에 필요한 이행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사. (상벌)

1. 편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조행적, 유적 및 종원 발굴에 공이 있는 者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위원 중 대동보 편찬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者는 대종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위자는 대종회장이 소명의

기회를 준다.

제5조 (분과구성 및 업무)

편찬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가. 운영분과 .. 편찬위원장을 보좌하여 각 분과별 편찬업무의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편찬위원장의 요청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나. 수단분과 .. 수단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 문헌분과 .. 경오보(1990)에 1권에 수록된 문헌 이외의史料를 발굴 정리, 수록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항 上世譜의 보완) 참조.

라. 전자보분과 .. 전자족보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마. 새종친분과 .. 족보간행을 홍보하는 업무와 계대불명(繼代不明)의 종친들에 관한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바. 幹事陣 .. 간사는 3~5인으로 구성한다.

1. 幹事長은 대종회 事務總長이 겸임하고, 간사진을 총괄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 집행하는 일을 지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족보발행을 弘報하는 업무는 간사장이 이를 관장한다.

3. 본 편찬위원회의 서무와 회계는 대종회 사무국장

이 겸임한다.

4. 위 분과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담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 諮問委員 .. 편찬작업에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대종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가.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종회장

2. 위원장 .. 1명

3. 부위원장 .. 4명

4. 간사장 .. 1명

5. 감사 .. 2명

나. (선임)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회장단에서 대종회장이 선임하고, 간사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하며, 대종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함)에 추인을 받는다.

다.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위원회의 존속 시까지로 한다.

라. (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찬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장이 되며, 그 서열은 연령순으로 한다.

3. 간사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와 간사진의 실무집행을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위원회의 재정집행상황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홍보

제7조. (광고) 사업계획과 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지면, 우선 2개 이상의 주요일간지 신문에 광고한다.

제8조. (내부광고) 회보, 종회지를 통하여 대내 광고를 적극 행한다.

제4장. 편찬과 收單(수단)

제9조. (대동보의 구분)

庚子대동보(2020)부터는 족보편찬을 電子譜(전자보)와 書冊譜(서책보)로 나누어 제작한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派系圖를 세분화하여 자손록에 신는 방법을 강구한다.

가. 전자보(電子譜) 전자보에는 인물사진과 기타 사진을 접할 수 있도록 꾸미고,

나. 서책보(書冊譜) 서책보는 아래와 같이 전·후편으로 하고 자손 수에 따라 속편으로까지 갈 수 있다.

前篇[전편] — 경오보 1권의 家藏(가장) · 文獻集(문헌집)에 추가될 자료를 한 편으로 묶는다.

後篇[후편, 자손록] — 자손록의 上世譜(상세보, 약

20쪽의 공통자료)는 후편의 각冊 머리에 실려야 하고 그 밑에 中世와 派祖로 이어 現世代로 이어간다. 그러므로 자손 수가 많은 계파는 후편에 續上—下篇[속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10조. (대동보 규격) 電子譜(전자보)와 書冊譜(서책보) 판의 규격은 흔히 A4 크기로 하고, 문자는 漢文(한글) 병기로 縱書(종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上系譜의 보완) 우리 해주최문은 고려조의 第一門閥(문벌)로서 門中에 전하는 문헌과 正史도 많지만, 박물관에 소장된 墓誌銘(묘지명)에 기록된 上系에 관한 우리가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史實들이 있어 이 중요한 자료들을 學界의 논문과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 후에 내용에 따라 전편 또는 후편에 나누어 적소를 찾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12조. (편찬세칙) 수단업무와 관련된 편찬세칙은 별도로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 (회계)

가. 본 위원회의 회계는 대종회사무국에서 시행하되, 대종회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재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종료 후 대종회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나. 상근위원과 사무원은 편찬사업 종료시까지 관공비, 거

마비, 여비 및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의 처리) 이상의 각 분과위원과 간사들의 업무집행을 위한 실비는 특별회계재정에서 지급한다.

제15조. (경오보의 입력작업)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선정 후 즉시 착수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 (규약제정) 본 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무보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단문서의 보존) 편찬위원회는 다음의 문서를 대종회사무국에 4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가. 대동보

나. 단자 수단지

다. 선대의 행장 및 문헌

라. 종원의 호적등본

마. 위원회에서 작성한 업무 및 회계 관련서류

부 칙

1.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회규약과 민법에 의한다.

2. 대동보 편찬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6. 23)

해주최씨대동보 수단위원 명단 (221명)

계파명	종회명	성명
사정공파	인천계	진범 영태 지철 근태 순배 정배
사정공파	해주 두동리계	권영
문정공파	홍안송종회	길로 성로 인상 길로 이섭 형로 인병 종구 문중 이섭
문정공파	수란종회	재성 홍섭 문호
문정공파	익산종회	일웅 홍섭 병식 병용 권섭 병기 재문 일섭
문정공파	합덕종회	제은 제진 제명 제천 동호 일풍 (제풍) 상준(준호) 대수(제광)
문정공파	소사종회	병인
문정공파	구정리종회	희섭
집의공파	제천종회	병기 창호 지호 완훈
대령군파	내촌종회	수영
대령군파	홍천종회 (강원지역포함)	재화 승환 승국
대령군파	송산종회	달영 교영 근영 운영 재서
대령군파	예산종회	양진 영복
대령군파	평북정주종회	춘해

계파명	종회명	성명
서운부정공파	포천일동종회	병관
서운부정공파	고읍 종회	영춘 완춘 문원
서운부정공파	여주종회	진호 진흥 진국
현감공파	강진종회	재삼 재점 종철 점섭 윤석 인수
현감공파	김포종회	영선 중찬 강민 강수 강현 윤충
현감공파	장평종회	재익
좌랑공파	결성종회	광소 덕수 경수
좌랑공파	영천종회	용구
좌랑공파	구리종회	갑수 중수
좌랑공파	문곡종회	승열
좌랑공파	덕산종회	건식 환식
좌랑공파	양주종회	영대(대식)
좌랑공파	의성안동군위종회	상술 종문 종은 종태 인준
좌랑공파	진천종회	달수 명수 진환
좌랑공파	금산종회	흠복 병선 원중 인철 현석
좌랑공파	참판공후손종회	영기 달수 덕수 원식 은섭 중영
좌랑공파	후사리종회	학수 민수
좌랑공파	쌍백당 종회	재석 중차 광형
좌랑공파	부천종회	용득 영화 영철
좌랑공파	가평종회	재규 재원 성환

계파명	종회명	성명
좌랑공파	화천종회	장섭 종모 문환
좌랑공파	용인종회	태섭 효섭 봉섭 재혁
생원공파	황해도 해남종회	승학
생원공파	예천종회	영수 성진 백규
생원공파	울진종회	장석 맹석 태주 홍순
진사공파	문경종회	장호 학구 인목 용섭 영식 정식
전한공파	수양공종회	상훈 영규
전한공파	파주검단종회	용섭 선호
전한공파	청주 분령종회	문수
전한공파	청주 서원종회	상섭 재갑 재봉 병호
전한공파	수화공종회	경주 광섭
전한공파	영암구림문중	철호 송호
전한공파	음성종회	재상 재호 영걸 기욱
전한공파	홍동종회	민섭 재운 육섭 재근
전한공파	남촌종회	찬부
전한공파	천안종회	의광 정인 희석 운근
판사복시공파		경섭
승지공파	화순종회	일섭 동렬
승지공파	보성종회	철식 영훈 종주 영행
승지공파	영덕종회	영래 성현 영철 승동 영중
승지공파		정휴 경휴

계파명	종회명	성명
승지공파	영동종회	형식 영식
승지공파	광주오산종회	판규
승지공파	합평종회	묘진 정수
승지공파	여수종회	환표
승지공파	곡성종회	국진 상준
승지공파	나주종회	연남
승지공파	장성종회	병관
진사공(윤망)	고흥군, 포두문중	영길 정수 권식 성아
진사공(윤망)	담양종회	재풍 종철 한필 종석
장사랑공파	광주전남종회	상선 전송 춘석 상순 형주 승모
감찰공파		규현 준열 병술 용주 대헌 재필
감찰공파	상리종회	동완
감찰공파	창원진해종회	태식
소윤공파	반곡종회	주석 종보 용호
해릉군파	부여종회	계정 성근
해릉군파	수원화성종회	규현
해릉군파	익산종회	은섭 성기 자원
해릉군파	덕산종회	원식 병기
복야공파	문정종회	인옥 인영

大同譜 編纂委員會 任員會
대동보 편찬위원회 임원회

1. 가장·문헌록편집 교정위원회
 • 위원장.. 공재(公在)
 • 위 원.. 강민(康民) 동석(東錫)
 암송(岩松) 현진(現鎭)
2. 총편·상계정리위원회
 • 위원장.. 공재(公在)
 • 고 문.. 강훈(康勳)
 • 위 원.. 강민(康民) 동석(東錫)
 암송(岩松) 현진(現鎭)
3. 수단·누보정리위원회
 • 수단위원장.. 암송(岩松)
 • 누보위원장.. 영철(英喆)
 • 위 원.. 광주(光柱) 창순(彰淳)
4. 화보편집위원회
 • 위원장.. 공재(公在)
 • 위 원.. 광주(光柱) 영철(泳喆) 창순(彰淳)
5. 인쇄 발간·보급위원회
 • 위원장.. 강민(康民)
 • 위 원.. 광주(光柱) 영철(泳喆)
 창순(彰淳) 한태(漢泰)

경자대동보 발간찬조 접수현황

구분	성명	대동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대동회	창섭	대동회장	현감공(각)파 32세	3,000,000
대동회	순현	명예회장	현감공(각)파 32세	2,000,000
대동회	공재	편찬위원장	진사공(은)파 32세	1,000,000
대동회	원식	고문	좌랑공파 32세	3,000,000
대동회	순정	고문	승지공파 32세	2,000,000
대동회	강훈	고문	현감공(각)파 37세	2,000,000
대동회	창호	고문	집의공파 33세	300,000
대동회	용섭	수석부회장	전한공파 32세	1,000,000
대동회	동석	부회장	승지공파 29세	3,000,000
대동회	창환	부회장	좌랑공파 32세	3,000,000
대동회	암송	부회장	승지공파 30세	2,000,000
대동회	종덕	부회장	진사공(은)파 33세	1,000,000
대동회	운선	부회장	현감공(각)파 36세	1,000,000
대동회	재상	부회장	전한공파 33세	700,000
대동회	의광	부회장	전한공파 31세	700,000

구분	성명	대동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대동회	중태	부회장	현감공(각)파 35세	500,000
대동회	창식	부회장	승지공파 31세	500,000
대동회	건식	부회장	좌랑공파 32세	300,000
대동회	집택	부회장	현감공(각)파 30세	300,000
대동회	영철	부회장	좌랑공파 32세	300,000
대동회	재삼	부회장	현감공(각)파 33세	100,000
대동회	영걸	감사	전한공파 34세	200,000
대동회	효선	자문위원	현감공(각)파 36세	2,000,000
대동회	강민	사무총장	현감공(각)파 37세	1,000,000
대동회	한태	사무부총장	해릉군파 34세	200,000
대동회	영철	홍보국장	승지공파 30세	2,000,000
대동회	광주	편찬간사, IT사업국장	승지공파 31세	500,000
대동회	광일	종무국장	좌랑공파 33세	300,000
대동회	영철	재무국장	전한공파 35세	200,000
대동회	송호	IT사업부국장	전한공파 34세	200,000
대동회	창순	사무국장	해릉군파 28세	100,000

家藏・文獻錄

구분	성명	대중회 직함	세수	금액
종친회		현감공(각)파 김포종회		4,000,000
종친회		부제학공종회		3,000,000
종친회		좌랑공파종회		2,000,000
종친회		전한공파종회		2,000,000
종친회		좌랑공파		2,000,000
종친회		참판공종회		2,000,000
종친회		광주전남도종회		1,000,000
종친회		현감공(각)파종회		1,000,000
종친회		해릉군파종회		1,000,000
종친회		북야공파종회		1,000,000
종친회		대령군파		1,000,000
종친회		송산종회		1,000,000
종친회		좌랑공파		1,000,000
종친회		양주종회		1,000,000
종친회		진사공(은)파		1,000,000
종친회		당진종회		1,000,000
종친회		감찰공파		1,000,000
종친회		함평종회		1,000,000
종친회		좌랑공파		500,000
종친회		덕산종회		500,000
종친회		진사공(은)파		500,000
종친회		문경종회		500,000
종친회		사정공파		300,000
종친회		두동리종회		300,000

구분	성명	대종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종친회		문정공파 구정리종회	200,000	
종친회		승지공파 영동종회(종흥)	200,000	
종친회		감찰공파 진주종회	100,000	
종친회		감찰공파 고성상리종회	100,000	
종친회	봉수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0세	200,000	
종친회	영섭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2세	100,000	
종친회	재진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500,000	
종친회	재오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300,000	
종친회	재학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익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광희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200,000	
종친회	재광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훈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선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회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무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구분	성명	대종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종친회	재식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200,000	
종친회	재균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근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400,000	
종친회	재남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재봉	현감공(각)파 장평종회 33세	100,000	
종친회	덕사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1,000,000	
종친회	용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00,000	
종친회	이환	경북 울릉군 울릉읍	300,000	
종친회	춘기	충북 청주시 청원구	300,000	
종친회	병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00,000	
종친회	충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200,000	
종친회	광식	경기도 성남시	200,000	
종친회	병목	경기도 부천시	200,000	
종친회	병호	충남 홍성군 홍동	200,000	
종친회	남호	전남 영암군 영암읍	200,000	
종친회	경호	전남 영암군 영암읍	200,000	

구분	성명	대종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종친	전송	전남 순천시 송광면		200,000
종친	규현	전남 함평군 함평읍		200,000
종친	광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50,000
종친	광돈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120,000
종친	창환	충남 당진시 계동 4길		110,000
종친	현영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0,000
종친	명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0,000
종친	동섭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100,000
종친	봉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00,000
종친	영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000
종친	영우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100,000
종친	석구	서울시 중구 약수동		100,000
종친	관식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00,000
종친	영덕	대전시 중구 태평동		100,000
종친	영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0,000
종친	영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0,000

구분	성명	대종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종친	수섭	경기도 오산시		100,000
종친	정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100,000
종친	진섭	전북 익산시		100,000
종친	수경	전남 보성군 북내면		100,000
종친	용문	강원도 인제군 남면		100,000
종친	승환	강원도 홍천군 남면		100,000
종친	성춘	충남 예산군 삼교읍		100,000
종친	병근	충남 홍성군 결성면		100,000
종친	형진			300,000
종친	창식			300,000
종친	기운			200,000
종친	병대			200,000
종친	기종			200,000
종친	창식			200,000
종친	재신			200,000
종친	한국영 스틸(주)			100,000

구분	성명	대종회 직함 또는 주소	세 수	금 액
종친	강진			100,000
종친	영부			100,000
종친	사수			100,000
종친	상복			100,000
종친	광재			100,000

編纂後記 편찬후기

가문(家門)의 역사(歷史)와 세계(世系)를 일목요연하게 기록(記錄)하고 정리(整理)해서 후손(後孫)에게 전할 수 있는 족보(族譜)는 자손들에게는 소중(所重)한 자산이며 전통적(傳統的)으로 보서(譜書)를 엮어서 펴내는 일은 큰 보람이라고 할 것이다.

해주최(海州崔)씨는 우리나라에서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推仰)받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선조님이 탄생(誕生)하신 이후 우리 가문(家門)의 내역을 크게 살펴보면 고려사(열전)에 이르기까지 홍전(紅牋) 7세(世)라 하여(문헌공 이후) 7대에 이어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고 재상에

오르는 등 문벌(門閥)이 흥룡하기로는 당시 비할 바가 없는 갑족(甲族)이라 하였고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문무대과(文武大科)에 급제하신 분이 수십명에 달하나 벼슬보다는 문장(文章)과 절건(節儉)으로 충절(忠節)을 숭상(崇尚)하는 가문(家門)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명문 대가(名門 大家)인 해주최문(海州崔門)에서 대동보(大同譜)를 펴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겠으나 창섭(昌燮) 대종회장의 각별(格別)한 지원 배려가 힘이 되었고 급변(急變)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족보의 형태를 옛날과는 많이 다르게 편집(編輯)하고 내용(內容)도 현시대에 맞게 한글로 전산화(電算化)하여 책족보와 인터넷족보를 겸해 종친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이번 발간(發刊)되는 경자보(庚子譜)는 고려 묘지명(墓誌銘) 발건과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고려사(高麗史) 등에 기록된 우리 선조들의 행적을 참고하여 상계(上系)를 바르게 소개하였다.

2. 경자보(庚子譜)는 해주최씨 문중(海州崔門) 근원(根源)에 대하여 불확실한 추론(推論)을 경계하고 우리 세보에 전해 내려온 근원(根源)을 토대로 정의가 고증(考證)된 사료임을 분명히 하였다.

3. 서두(序頭)에 화보(畫報)를 넣어 입체감(立體感)있는 보서편찬(譜書編纂)으로 많은 종친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권마다 목차(目次)、상세계도(上世系圖)、명행도(名行圖)、상계총편을 넣어 파조(派祖)와 연계시키고

세계순(世系順)、파계도순(派系圖順)으로 편집하였고 각 파보편마다 간지로 구분하여 계파조(系派祖)부터 새로 시작하였다.

4. 최문(崔門)의 보서(寶書)인 수양열전(首陽列傳)에 있는 귀중한 자료(資料)를 최대한 활용하여 후손들이 조상의 행적을 알아보도록 하고 가장(家藏)、문헌록(文獻錄)에 28개파의 파조(派祖)를 수록(收錄)하여 각파의 위상을 높이고 파(派) 위주로 종친간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선조(先祖) 모시는 곳을 해주(海州)의 문헌서원을 비롯하여 전국(全國) 각지에 있는 서원(書院)、사우(祠宇)、재실(齋室)등을 사진(寫眞)과 함께 소개하였다.

5. 경자대동보는 권1에 가장(家藏)。문헌록(文獻錄)을 편집하고, 자손록은 권2~권15까지로 편집하였으며, 각 권(卷)의 쪽수를 1,500쪽 내외로 하여 사용(使用)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보서(譜書) 구입도 권1(가장、문헌록)과 해당파가 수록된 보책(좌랑공파는 권6권7 권8 권9권, 승지공파는 권12 권13)만 구입하도록 하였다.

6. IT시대를 맞아 내용도 다양화해 아이콘을 통한 사진 가족력 등을 젊은 세대(世代)들이 조금은 느끼며 펼치는 가장(家藏)、문헌록(文獻錄)이 되기 위해 정보보를 한글로 전산화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때(時)와 장소(場所)를 가리지 않고 검색(檢索)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자손록(子孫錄)의 편집에서는 1990년에 펴낸 경오보(庚午譜)를 근거로 하되 과거의 보서(譜書)는 주요 경

력을 관직(官職) 위주로 등재하였지만 시대 상황이 가치(價値)의 다원화(多元化)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재직위(登載職位)의 기준을 없애고 당사자의 재량(裁量)에 의하여 등재하며 학력(學歷)도 임의 등재하도록 하였다.

8. 현시대에는 남녀(男女)가 평등하고 아들 딸 구별 않고 1~2명만 낳는 시대임으로 여식(女息)들도 수단(收單)하도록 하였으며 사위(婿)는 딸의 부(夫)로 등재(登載)하고 외손(外孫)도 등재(登載)하도록 하였다.

9. 그 동안 수단위원(收單委員)과 지역 종회장이 수차례 수단(收單)을 권유해도 족보하여 무엇 하느냐는 종친이 있어 수단(收單) 비율(比率)이 떨어지고 대동보편찬위원회 집행부가 지역별로 방문(訪問)해도 외면(外面)하는 실정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나 추후(推後) 기회 있는 대로 추가(追加) 등재하도록 해야 함으로 다같이 권유하기 바란다.

10. 2020년 12월 31인자로 수단집수가 종료되고 인쇄작업 직전에 종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자손록에 독음(讀音)을 달고 선조님의 훌륭한 행장(行狀)을 번역하여 종친의 이해를 돕기로 하였다.

11. 또한 2001년 7월 30일 발간된 추보(追譜)와 2007년에 발간된 영의정공(領議政公派) 파보를 제자리 찾아 계파(系派)별로 정리하고 말미에 수록된 계파미상(系派未詳)과 상계미상(上系未詳)은 별도 계정(啓程)을 두어 통일 후 수시정리(隨時整理)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12. 대동보 상세계도에 표시된 봉산계(鳳山系)를 봉산사 인계 파보로 계대를 정리하여 영열공파로 정리할 계획으로 선교사인 장손 정인(貞仁) 종친과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해당과 종인들의 비협조로 봉산계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경자보에 수단접수 정리된 종파는 28계파로 해주최씨 경자대동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13. 지면관계로 관직용어, 보첩술어, 기타상식용어는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족보에 등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解決)을 위해 전화상담과 지역별(地域別) 종회(宗會)를 통해 협의회(協議會)를 2~3차 개최(開催)하고 수단(收單)을 독려(督勵)하였으나 흡족하지 못한 것은 이 시대(時代)가 만들어 낸 결과(結果)라 생각되며 대종회(大宗會)에서 누보자(漏譜者)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추가정리(追加整理)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대종회가 건재(健在)함으로써 해주최씨가 더욱 빛난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諒解)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또는 지역 종회별로 편집(編輯)후 교정작업(矯正作業)은 하였으나 사람이 한 일인지라 오자(誤字)나 탈자(脫字)등의 실수(失手)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당사자(當事者) 되시는 종친들의 너그러운 이해(理解)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경자보를 제작(制作)하는데 각별(格別)히 힘을 보태 준 임원(任員)들에게 창섭(昌燮) 대종회장을 대신해서 한번 감사(感謝)드린다.

* 가장·문헌록편집 교정위원회

위원장..공재(公在)

위원..강민(康民) 동석(東錫)

암송(岩松) 현진(現鎭)

* 총편·상계정리위원회

위원장..공재(公在)

고 문..강훈(康勳)

위원..강민(康民) 동석(東錫)

암송(岩松) 현진(現鎭)

* 수단·누보정리위원회

수단위원장..암송(岩松)

누보위원장..영철(英喆)

위원..광주(光柱) 창순(彰淳)

* 화보편집위원회

위원장..공재(公在)

위원..광주(光柱) 영철(泳喆) 창순(彰淳)

* 인쇄 발간·보급위원회

위원장..강민(康民)

위원..광주(光柱) 영철(泳喆)

창순(彰淳) 한태(漢泰)

경자 2020년 12월 일

해주최씨 경자대동보 편찬위원장

진사공파 32세 공재(公在) 謹識

海州崔氏庚子大同譜

編纂議決 2015年(乙未) 12月 18日

收單終了 2020年(庚子) 12月 31日

發 行 2021年(辛丑) 5月 10日

發行處：海州崔氏大宗會

住所：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75, 文憲빌딩 4층

電話：(02)845-5572 FAX (02)845-5573

홈페이지 [http : //www.haejuchoi.or.kr](http://www.haejuchoi.or.kr)

發行人：大 宗 會 長 昌燮

編纂人：編纂委員長 公在

族譜 및 인터넷族譜 編輯 制作：

(주)척척미디어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가동 305호

電話：(02)701-1856 FAX (02)701-1857

출판등록：제3-5425

(全15卷)